

의정활동보고서

제183회 정례회(2003. 11. 20 ~ 12. 19)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도정을 설계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30일간의 회기로 제183회 정례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나온 올 한해는 우리 도의회가 의정의 역점을 『**민의 수렴**』에다 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활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미흡한 자치환경 속에서도 의욕적으로 활동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300만 도민의 복리증진
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중앙정치계는 대선자금 파동으로 흥미한 정국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회 각계에서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가 완비되고
선진화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하여 모든 정치인은 함께 고민하고 노력
해야 할 것 입니다.

국내 경제는 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도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체감경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농촌이 급년엔 잦은 강우와 태풍내습으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못한 관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FTA 한·칠레 비준을 남겨두고 있어 농촌회생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화물연대 파업을 원만히 해결하고 전세제를 공포로 몰아 넣었던 사스 전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엄청난 재난을 몰고 온 『태풍 매미』에도 좌절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해 낸 한해 였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속철도 김천역사 건립 건의』를 중앙정부가 마침내 수용함으로써 도내 중·서북지역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70여일간의 대장정으로 대과없이 마무리 되었으며, 최근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 체전에서는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우리 도가 전국 5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점은 바로 우리 도민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금년도 도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의 점검과 내년도를 설계하는 정례회로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정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짜여 졌는지를 검토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하시어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께서서는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정례회도 내실있는 회기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11. 20

경상북도의회 의장 崔 圓 炳

차 례

I . 개 황	
II . 의사 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위원회	
III .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위원회	
IV . 민원 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2. 조례공포사항

3. 의안 철회사항

4. 기타사항

VI. 도정질문

VII. 5분자유발언

부 록

☐ 조 례 안

☐ 예 산 안

☐ 동 의 안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83회 정례회는 2003년 11월 20일 개최하여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회기동안 4차의 본회의와 연 28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11월 20일(화)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자유발언(정보호 의원, 김석호의원, 김정기 의원)을 청취한 후 제183회경상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004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2004년도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경상북도지사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 등을 의결하고 휴회하였다.

회기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04년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조례안 등의 각종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12월 1일(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 및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에 관한 질문(권경호 의원, 임원식 의원 장욱 의원, 김순건 의원)을 하고 12월 16일(화)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자유발언(황상조 의원)을 청취한 후 2004년도경상북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처리하였으며,

12월 19일(금)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과 2004년도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 계획안 등 15건을 처리한 후 제18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 일정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정례회

나. 소집 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라. 집회공고일 : 2003. 11. 6

마. 집 회 일 : 2003. 11. 20(목) 11:00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3. 11. 20 ~ 12. 19(30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4회(누계 39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 획	행정 사회	교육 환경	농수산	산업 관광	건설 소방	특별
금회	28	2	3	4	3	2	3	3	8
누계	184	19	20	25	29	19	22	20	30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3. 11. 20(화) 11:00	1. 제183회경상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6. 휴회의건	제 1 차 원안가결
12. 1(월) 11:00	1. 도정에 관한 질문 - 권경호 의원(기획위) - 임원식 의원(산업관광) - 장 욱 의원(건설소방) - 김순건 의원(교육환경)	제 2 차
12. 16(화) 11:00	1.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4. 2004년도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운용계획안	제 3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11.28(금) 15:00	○ 제184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의회사무처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
12. 1(화) 16:00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의회사무처 소관 ○ 2004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의회사무처 소관	제 2 차 원안가결 "

<기획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12. 2(화) 11:00	○ 2004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소관 ○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12. 3(수) 11:00	○ 2004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 2 차 원안가결
12.16(화) 14:00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제 3 차 원안가결 "

<행정사회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12. 2(화) 11:00	○ 2004년도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제 1 차 원안가결 " " " " "
12. 3(수) 11:00	○ 2004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경도대학,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 2 차 수정가결
12. 4(목) 11:00	○ 2004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자연환경연수원) 소관	제 3 차 수정가결
12.16(화) 14:00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세감면개정조례안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제 4 차 원안가결 "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 12. 2(화) 11:00	○ 2004년도경상북도교육청예산안 심사	제 1 차 수정가결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12. 3(수) 11:00	○ 2004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보건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 2004년도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운용계획안	제 2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
12. 4(목) 11:00	○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2004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 3 차 원안가결 " "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12. 2(화) 11:00	○ 2004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농수산국 소관 ○ 2004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 1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12. 3(수) 11:00	○ 2004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농업기술원 소관 ○ 2004년도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제 2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

<산업관광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3.12. 2(화) 11:00	○ 2004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경 제 통 상 실 소 관 ○ 2004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제 1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
12. 3(수) 11:00	○ 2004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소 관 ○ 2004년도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	제 2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 "
12.16(화) 11:20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제 3 차 원안가결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3.12. 2(화) 11:00	○ 2004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건 설 도 시 국 소 관 ○ 2004년도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 1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
12. 3(수) 11:00	○ 2004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소 방 본 부 소 관	제 2 차 원안가결
12. 16(화) 11:20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제 3 차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12. 5(금) 10:30	○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제 7 차
12. 6(토) 10:30	○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 8 차
12. 8(월) 10:30	○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 경제통상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 9 차
12. 9(화) 10:30	○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 10 차
12. 10(수) 10:30	○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제 11 차
12. 11(목) 10:30	○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 건설도시국, 경도대학, 소방본부 소관	제 12 차
12. 12(금) 10:30	○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 보건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의회사무처 소관 ○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제 13 차
12. 13(토)	○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12. 15(월) 10:30	○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토론 및 의결 ○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토론 및 의결	제 14 차 수정가결 수정가결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 의 · 의 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 결		부결			
				원안	수정				
계		26 (153)	25 (152)	22 (137)	3 (14)	(1)		1 (1)	유보1
조 례 안	소계	6 (61)	6 (61)	5 (57)	1 (3)	(1)			
	의 회 제 안	1 (3)	1 (3)	(1)	1 (1)	(1)			
	도지사 제 출	5 (47)	5 (47)	5 (45)	(2)				
	교육감 제 출	(11)	(11)	(11)					
예 산 · 결산		2 (15)	2 (15)	(7)	2 (8)				
동의 · 승인		17 (45)	17 (45)	17 (44)	(1)				
건 의 안		(7)	(7)	(6)	(1)				
결 의 안		(7)	(7)	(7)					
기 타 안		1 (18)	(17)	(16)	(1)			1 (1)	유보1

※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 의	기 타			
계	26 (155)	25 (152)	6 (61)	2 (15)	17 (45)	(7)	(7)	(17)			1 (3)
의회운영	(2)	(2)	(1)				(1)				
기 획	1 (14)	1 (13)	1 (7)		(4)	(1)		(1)			(1)
행정사회	10 (43)	10 (42)	4 (26)		6 (15)	(1)					(1)
교육환경	3 (20)	3 (20)	1 (14)		2 (5)			(1)			
농 수 산	2 (10)	2 (10)	(3)		2 (6)	(1)					
산업관광	5 (20)	5 (20)	(8)		5 (11)		(1)				
건설소방	2 (9)	2 (9)	(2)		2 (4)	(2)		(1)			
특 별	2 (15)	2 (15)		2 (15)							
본회의	1 (22)	(21)				(2)	(5)	(14)			1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6 (63)	1 (5)	(8)	1 (9)	1 (11)	1 (5)	(3)	(6)	1 (5)	1 (11)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1 (7)	1 (4)	(2)	(1)						
교육환경	1 (11)			(1)		1 (5)		(5)		
농 수 산	1 (6)			(1)	(1)				1 (4)	
산업관광	2 (14)		(6)	1 (1)			(3)			1 (4)
건설소방	1 (20)	(1)		(5)	1 (10)			(1)	(1)	(2)
특별위원회	(3)									(3)

※ ()안은 제7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4 (61)	4 (61)				2 (2)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1 (7)	1 (7)				
교육환경	1 (11)	1 (11)				
농 수 산	1 (6)	1 (6)				
산업관광	1 (13)	1 (13)				1 (1)
건설소방	(19)	(19)				1 (1)
특별위원회	(3)	(3)				

※ ()안은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상북도교육감 (2003. 11. 8)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교육환경 (2003. 11. 10)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0)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각상임위 (2003. 11. 10)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1)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 획 (2003.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1)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행 정 사 회 (2003.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1)	경 상 북 도 공 인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행 정 사 회 (2003.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1)	경 상 북 도 세 감 면 조 례 개 정 조 례 안	행 정 사 회 (2003.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1)	2004년도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	행 정 사 회 (2003.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1)	2004년도경 상 북 도 사 회 복 지 기 금 운 용 계 획 안	행 정 사 회 (2003.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1)	2004년도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	행 정 사 회 (2003.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1)	2004년도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행 정 사 회 (2003.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1)	2004년도경 상 북 도 노 인 복 지 기 금 운 용 계 획 안	행 정 사 회 (2003.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1)	2004년도경 상 북 도 여 성 발 전 기 금 운 용 계 획 안	행 정 사 회 (2003.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1)	2004년도경 상 북 도 식 품 진 흥 기 금 운 용 계 획 안	교 육 환 경 (2003. 11. 12)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1)	2004년도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운용계획안	교육 환경 (2003.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1)	2004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농 수 산 (2003.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1)	2004년도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농 수 산 (2003.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1)	2004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산업 관광 (2003.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1)	2004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산업 관광 (2003.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1)	2004년도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산업 관광 (2003.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1)	2004년도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산업 관광 (2003.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1)	2004년도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	산업 관광 (2003.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1)	2004년도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건설 소방 (2003.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1)	2004년도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건설 소방 (2003. 11. 12)
경 상 북 도 지 사 (2003. 11. 18)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 사회 (2003. 11. 18)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박승학 의원외 18인 (2003. 12. 2)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교육환경 (2003. 12. 2)
경상북도지사 (2003. 12. 11)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3. 12. 12)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3. 11. 4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2003. 11. 20
2003. 11. 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	2003. 11. 20
2003. 11. 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	2003. 11. 20

3. 의안 철회사항

철회 의 안 명	철회요구자 (요 구 일)	철회 조치일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당초 제출일자 : 2003. 11. 18 · 소관 위 원 회 : 행정사회 ※ <u>철회사유</u> : 의회사무처 근무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코자 함(당초 6명증원→10명증원)	경상북도지사 (2003. 12. 10)	2003. 12. 11

4. 기타 사항

○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 일 시 : 2003. 11. 5(수) 16:00
- 장 소 : 경주 보문 유스호스텔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 제84회 전국체전 경북선수단 해단식

- 일 시 : 2003. 11. 6(목) 10:30
- 장 소 : 안동 체육관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축사)

○ 한국 국학진흥원 국제학술대회

- 일 시 : 2003. 11. 6(목) 13:30
- 장 소 : 국학진흥원 세미나실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

○ 제42회 도민체전 범시민 추진위원회 결성식

- 일 시 : 2003. 11. 7(금) 14:00
- 장 소 : 경주시청 회의실
- 참 석 : 최원병 의장(격려사)

○ 경북 생물건강산업 육성전략 심포지엄

- 기 간 : 2003. 11. 7(금) 14:00
- 장 소 : 안동대학교 세미나실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

○ 제8회 농업인의 날 행사

- 기 간 : 2003. 11. 7(금) 14:30
- 장 소 : 대구 국채보상공원
- 참 석 : 정무웅 부의장(축사)

○ 제13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 기 간 : 2003. 11. 8(토). 17:00
- 장 소 : 포항 종합경기장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 도 종합 자원봉사센터 창립총회

- 기 간 : 2003. 11. 10(월). 14:3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이현준 · 황복희 의원

※ 인사위원에 이현준 의원, 법인이사에 황복희 의원이 선출됨

○ 제8회 농업인의 날 행사

- 기 간 : 2003.11. 11(화). 11:00
- 장 소 : 수원 농촌진흥청 강당
- 참 석 : 최원병 의장

○ 대구·경북 분권혁신협의회 공동의장 회의 및 운영위원회

- 일 시 : 2003. 11. 12(수) 12:00
- 장 소 : 대구 샌토리 식당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

○ 경북리그 시상식

- 일 시 : 2003. 11. 13(목) 16:00
- 장 소 : 박정희 체육관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 바르게살기운동 영·호남 화합행사

- 기 간 : 2003. 11. 14(금). 14:00
- 장 소 : 전북 남원 춘향예술회관
- 참 석 : 김희문 행정사회 위원장

○ 당면 현안사항 토의 간담회

- 일 시 : 2003. 11. 17(월). 10:3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의장단, 상임위원장 · 간사

○ 도 체육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 일 시 : 2003. 11. 17(월). 14: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의장단, 상임위원장 · 간사

○ 2003년도 새농민회 경북도회 정기총회

- 일 시 : 2003. 11. 18(화). 10:00
- 장 소 : 성주 문예회관
- 참 석 : 정무웅 부의장(축사)

○ 제12회 경상북도 자활 · 자립상 시상식

- 일 시 : 2003. 11. 19(수). 14:00
- 장 소 : 안동 시민회관
- 참 석 : 김선중 부의장(축사)

VI. 도정 질문

□ 제2차 본회의

권경호 의원(기획위원회)

최원병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183회 정례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의근 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경상북도의 주요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지역 균형개발을 도정의 지표로 삼고 경북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중점 개발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구미, 포항을 잇는 남부권역과 의성, 영주, 안동을 잇는 북부권역의 개발 및 발전상태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북부권역은 인구감소는 물론 획기적으로 발전할 전망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산업시설은 대구를 중심으로 구미, 포항을 연결하는 산업벨트 내에 집중되어 있어 북부지역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의식으로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극도에 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북이 가진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대구와 구미, 그리고 포항을 개발의 축으로 해서는 더 이상 경북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북 북부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북부권의 발전을 통하여 경상북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경북도청이 북부권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경북 북부의 낙동강 상류지역에는 안동댐과 임하댐이 있습니다. 때문에 댐에 인접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너무나도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여

왔습니다. 특히 댐의 건설로 인한 기상변화는 대기오염, 농산물 피해, 질병 등을 발생시켰고 자연생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겨울에는 극심한 혹한에, 봄·가을에는 심한 안개 등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인내하며 그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지만 이제 보상의 차원에서는 물론 경북의 형평성 있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도청이 북부지역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청이전의 문제가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도청이전은 처음부터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북도청이 도의 행정구역을 벗어나 대구광역시 내에 언제까지고 그대로 존속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청이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하나 토론과 논의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그 중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는 노력은 이제부터라도 다시 재개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청이전에 대한 로드맵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가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차원에서 내수면 어업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이 처한 상황은 도무지 앞날을 분간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절박한 상태입니다. 농업인들은 정부가 농업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큰 우려와 불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기상변화에 따른 흉작으로 인한 소득감소,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대량 수입 등 농가는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태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DDA 협상이 그대로 현실화될 경우 농업의 붕괴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정에 대한 특단을 촉구하면서 한편으로 농민들이 농촌에 살고자 하는 동기를 만들고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한 한 가지 실질적인 대책으로서 경상북도 내 내륙지역에서의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내수면 수산자원의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개발연구소 내에 민물고기연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의 예산중 50%는 연어와 관련된 사업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그 사업의 효과는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 내륙지역의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물고기연구센터의 부족한 시설을 보다 현대화하고 지금 한명뿐인 연구사를 대폭 보충하여 실질적인 내수면 어업의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 그동안 대량생산이 어려웠던 각종 토속어종의 전문적인 양식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주 5일제가 시행되면 레저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북지역내 각 하천과 저수지 등에서 낚시 레저가 활성화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참붕어를 비롯한 쏘가리, 메기, 동사리, 통구리 등 환경친화적 토속어종의 치어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각 하천 등에 방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수생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붉은 귀거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환경부의 붉은 귀거북 전국 서식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붉은 귀거북이 발견된 바, 우리 경북지역 내에서는 놀랍게도 그의 출현비율이 인천 71.4%, 서울 62.1%에 이어 3위의 출현비율인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출현지역도 구미의 금오지와 영천의 금호강, 울진의 연호정 등 경북의 강, 저수지 등에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보호라는 차원을 넘어 농촌주민들의 생존기반을 지키는 일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청정지역이어야 할 농촌이 실제로는 농촌 어디를 가나 잡다한 쓰레기, 폐비닐, 폐영농자재 등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농가는 쓰레기를 모으면 불에 태워 처리하며 정작 분리수거를 해 놓아도 처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환경호르몬을 다량으로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불법소각의 피해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법의 강력한 시행을 통해 불법소각을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청되며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설치와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여 쓰레기 수거와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농촌은 도시처럼 분리수거를 전면 도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리수거의 목적이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농촌에도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의견과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향후 레저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많은 도시민들이 관광지와 농어촌으로 이동할 것이며 그에 따라 물 사용량의 증가는 물론 각종 폐기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폐기물 증가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처리 기초시설이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님비(NIMBY)현상의 만연으로 인해 부지의 확보조차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각 시군에 있는 환경처리 기초시설의 광역적인 활용방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경북농업의 미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멕시코의 칸쿤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다룬 제5차 세계 무역기구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장 앞에서 한국의 농업지도자 이경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음은 아마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농민이 해외에 나가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농업개방을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농업개방은 곧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 당시 농업분야의 선언문대로 진행된다면 최악의 경우 2010년에 우리 농민의 소득은 현재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인이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을 중요 산업기반으로 삼고 있는 우리 경북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농업개방을 반대하는 국내의 여론이 드세다고 해도 수출주도형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세계무역자유화의 흐름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북 농업의 발전 없이는 경북의 발전도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농업의 경쟁력 제고만이 살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경북이 해왔던 사업과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우리 경북은 미래 성장동력산업 12개의 전략품목을 발표하고 산업 옹도로 거듭 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2004년도부터는 경제제일도정을 목표로 재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말까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는 지역혁신체제 구축, 전략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선 3기 2년을 계획하는 가운데 농업에 대한 대책과 비전을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향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 등을 비롯하여 모든 경상북도의 미래계획에 첨단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비중으로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성장동력산업을 농업부문에서 구하는 창의적인 발상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농림부가 전국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2003 파워브랜드 수상작을 발표한 바 있는데, 우리 경북은 우수한 농작물 12개 품목을 출품하였으나 성주참외만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전국 수준의 우수 농특산물 개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차제에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하고 농업의 규모화, 현대화, 표준화로 글로벌 농산물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이번 밭작물 중에서 우리 경북에는 그 품질이 우수한 영양고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음성과 괴산의 청결고추 등이 우수농산물로 선정된 바 있어 억울한 심정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제12회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회에서 대상을 차지하여 영양고추가 4년간 연속대상을 기록해 전국에서 영양고추가 전국 최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여 그나마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고추농사는 올해 역병에다가 탄저병, 습해까지 덮쳐 30~40%이상 수확이 감소되었으며, 특히 지난 9월 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가 많은 지역에서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북지역의 특산물인 고추의 전국적인 품질향상과 안정적 생산을 위해 고추농사에 있어서도 친환경농법인 비가림 재배를 실시할 것을 적극 제안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사께서 그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임도는 1968년 국유임도 개설을 시작으로 1984년부터 민유임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그 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1999년말 실시된 임도시설 거리는 1만4,432km로서 ha당 임도밀도는 2.2m에 불과하여 임업 선진국인 일본 5m, 미국 10m, 독일 40m에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임도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산림사업의 능률을 향상시켜 결국 임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기하여 농·산촌 지역사회가 타지역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업임에 틀림없다는 점에서 임도개설은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임도개설이 인위적인 난개발로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거나 수해로 인한 산사태의 발생이 잘못된 임도의 개설로 인해 피해가 증가되었다는 지적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임도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따라서 임도개설에 대한 예산을 늘려 부실하게 시공된 기존 임도의 개량과 더불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ha당 임도 밀도를 산림경영에 충분하도록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새로이 개설되는 임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질조사와 생태조사를 하여 임도가 산사태의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의 규모화, 토공량 최소화, 절·성토된 사면의 안정녹화 등을 기하고, 또한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임도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북의 경우 2003년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민유림의 경우 1995년까지 계속 임도시설이 증가되어 오다가 그 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여 2002년말 현재 총 1,880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임도의 길이는 경남의 2,305km, 전남의 2,067km보다 훨씬 적은 길이로서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더 커지고 있는 지금 상대적으로 임도에 관한 관심과 투자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02년말 현재 경상북도의 산림 총 면적은 190만 여ha로 단순면적으로는 강원도 160만여ha보다 넓으며 산림면적율로서는 70.84%로서 강원도 82.58%에 이어 전국 두 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그 어느 타시·도 지역보다 많은 임야면적과 임목축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으로서는 국유임도는 물론이고 민유림에 대한 자금의 융자와 보조를 통해 임도개설 확대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산림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피해 보상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낙동강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모두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취지 아래 지난 '98년 정부와 시·도 합동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특별법은 효과적인 수질보존 및 관리라는 훌륭한 명분을 갖고 있음에도 수변구역의 지정, 오염총량제 실시 등 상류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던 법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미 경북 북부지역에는 국가적 물문제와 산업고도화

정책을 위해 지난 '76년과 '92년에 안동댐과 임하댐이 각각 준공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한 지역 내에 두 개의 댐이 건설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1,660ha나 되는 막대한 농경지를 수몰시키고, 연 200시간이나 단축된 일조시간과 댐 건설 이전 연 38일이던 안개일수가 무려 20일이나 증가된 연 58일 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상의 피해 및 농작물 생육지장, '76년 182.65km²에 달하는 광대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개발규제로 인한 낙후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규제로 낙동강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일방적 제재 속에서 희생과 피해를 강요당해 왔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낙동강특별법이야말로 국가와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대표적인 법으로 시행상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앞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상류지역 주민의 피해가 막대할 뿐 아니라 가뜰이나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을 더욱 낙후시키고 있어 이 지역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경북, 경남, 울산, 부산, 강원 등 광역자치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규정의 제정이나 재정운영 등에 관해 조율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 위원회의 회의에서 지사께서 우리 경상북도의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을 위해 활동한 업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물이용 부담금으로 주민 숙원사업, 농로확장 등의 지원금으로 안동 91억원, 청송 36억원, 영양 15억원, 상주 9,500만원, 예천 1억4,000만원, 봉화 1,000만원, 포항 4억5,000만원, 경주 10억원, 영천 23억원, 경산 2억5,000만원, 청도 35억원, 고령 9억원 등 228억4,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물이용 부담금 지원의 지역선정 기준과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낙동강특별법 시행 이후 금년까지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의 피해현황과 보상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일시적 땀질식 보상으로는 절대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의 피해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 후 이주 등 근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를 연구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내 체벌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31 교육개혁안’의 이른바 ‘민주시민교육방안’은 1998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 욕설, 폭언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7곳이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북교육청 관할지역의 경우 체벌금지학교가 39.1%에 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체벌은 자칫 잘못하면 곧 사회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폭력의 재생산 구조를 낳을 수 있으며 근원적으로 인간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학교체벌의 전면적인 금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때리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을 때려서 말을 듣게 한다면 교사로서 자격이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도내 몇 개의 고등학교 학칙을 조사해 보았는데, 다수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생의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하지만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라 함은 학습 분위기를 해친다든가 다른 학생을 괴롭힐 경우, 혹은 교사의 약속을 어기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학교에서의 반인격적인 체벌, 폭언 등을 전반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에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반인권적인 체벌규정을 전면적으로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원식 의원(산업관광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근 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울진 출신 임원식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0월30일 재선거로 등원한지 채 1개월밖에 되지 않는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최원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2년 연속 수해피해 문제에 대하여, 먼저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루사 태풍 피해의 상처도 채 아물기 전에 지난 추석에 밀어닥친 태풍 매미의 충격으로 돌아가신 분들께 조의를 표하며, 엄청난 피해와 아픔을 겪고 있는 이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연속 태풍으로 인한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태풍은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이번 매미 태풍피해는 인재에 의한 피해라고 지적하면서 매년 장마와 태풍이 반복되는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으로 볼 때 이는 사전에 예견되는 사안으로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안전진단 및 점검이 있었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반복되는 피해에 대한 땀질식 복구와 의례적인 피해로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무감각해진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사후의 땀질식 복구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도의 수해 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항구적인 복구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래 경북농업을 위한 친환경 농업에 대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화로 농어촌은 희생을 강요당하였고 농촌경제는 침체와 공동화현상에 이르렀습니다. 농업은 거대한 태풍 앞의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어 농촌의

참담한 현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또한 세계 농업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의 압력은 거세지고 한·칠레 무역협정 비준을 앞두고 모든 시장을 개방해야 할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쌀이 우리나라에 밀려들어올 경우 가격경쟁이 되지 않아 대다수 농가는 쌀 농사를 포기하고 생계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민족농업을 지키고 생존권을 위해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시 농산물 개방 반대시위에 참가한 우리나라 농민 대표 한 분이 자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경북 농민들은 FTA 비준 반대를 위해 상경하여 정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충돌하여 많은 농민이 구금되고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만 하고 바라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농정의 실패, 농업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본의원은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하루빨리 중앙정부에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에게 제시하고 농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상북도도 이제는 중앙정부에 기대는 정책에서 탈피하여 곧 입법화되는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추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과 아울러 혁신적인 농업 정책을 수립하여 농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도라고 자처하는 경북의 농산물이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경북도가 “2003파워브랜드”에 출품한 12개 품목 중 고작 1개 품목(성주 풍경참외)만 파워브랜드로 선정된 것만 보아도 경상북도 농정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써 농산물 경쟁력 확보에 실패했다고 보며, 이제는 양만을 따질 때가 아니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안전성이 있는 유기농업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잘사는 희망찬 농촌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울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는 적절한 시기에 치루어지는 미래 경북농업의 획기적 발전의 시작이라고 보며, 울진 친환경 농업엑스포를 경북농업의 모델로 삼아 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울진 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에 따른 예산과 친환경농업 기술력을 확대 지원함은 물론 경북도 차원의 홍보전략 수립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분권에 대한 준비에 대하여,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지방자치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중앙집권적인 행정·정치·경제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어 불균형적인 상태로 지속되어 왔던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참여정부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곧 법이 제정되면 새로운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추어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본의원이 경상북도 공무원 조직과 시스템을 살펴볼 때 분권시대를 맞아 업무수행이 제대로 될지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한국의 관료조직은 “보이지 않는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투표와 상관없이 집권을 하고 끈질긴 생명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외근 지사님께서서는 3선 출마 금지라는 법의 제약 때문에 2년 후에는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경북 공무원 조직이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지시하는 일만 하는 소극적 자세로 직무를 수행할 것 같아 본의원은 염려되는데 지사님께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 중앙정부의 각종 사무의 권한이 이양되고 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재정확충 등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조직운영, 인력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는 결정권이 부여되며 이외에도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는 자체 계획을

수립,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간의 무한경쟁에 돌입하는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도입하고 집행하며 사업을 관리해야 할 주체가 바로 조직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직을 개혁하여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는 공무원의 교육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 전문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미래를 준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수직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집행부와 경북도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면 도의회에 사무처직원 인사권이 이양되어 올바른 자치제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상북도 5급사무관 승진제도에 관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6년까지 공무원 5급 승진은 시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나 지방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심사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진심사에서는 단체장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단체장의 인사전횡 등 심사제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지난해 말 재개정하여 심사결과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올해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 5급 승진제도를 완전시험제 또는 시험제, 심사제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직 5급 승진제도에 관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승진을 앞두고 있는 6급 고참 공무원들의 경우 그야말로 업무와 평점관리를 물론 시험공부까지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심사제와 시험제를 병행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시행방법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아 해당공무원들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즉 5급 승진을 심사제로 50% 반영할 경우 어떤 기준을 갖고 누구를 대상으로 심사할 것인지, 그리고 시험제를 실시한다면 언제 어떻게 치를 것인지를 하루빨리 결정하여야만 합니다. 예견할 수 있는 투명행정을 외치면서 정작 공무원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여 많은 대상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겪게 한다면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대민 행정서비스의 차질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있을 5급 승진제도에 대한 인사기준과 방침을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북의 어민생존권에 대하여, 경북 동해안 어민들은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영세민들은 소형 선박을 이용 근해에서 조업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대형트롤어선, 기업형 쌍끌이 어선의 불법 마구잡이 근해 조업으로 인해 어자원이 고갈되어 더욱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현행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의 조업금지규정을 해양수산부가 어업금지구역의 조정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동해안 어민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로써 동 규정의 해제를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해안 근해에서 대형트롤어선, 기업형 쌍끌이어선의 조업을 수산자원의 보호차원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률 검토 및 조례 제정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욱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의근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앞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에 노심초사하시는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며칠 전부터 도청 정문 앞에서는 벼 가마니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절규와 눈물, 분노가 담겨져 있는 벼 가마니를 보면서 본의원은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아니 그보다 농촌을 사랑하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농촌의 실상을 보여주는 이러한 광경을
보아야 하는 나 자신에게 분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몸으로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왔던 도정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자
께서는 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시간관계상 첫 번째 질문인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문제와
농촌인구 문제와 농업정책, 그리고 부단체장 자체 임용 문제와 교육청 소
관만 낭독을 하고 기타 질문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원고에 답변을 부탁
드리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를 의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먼저 지사님께 물겠습니다.

첫째,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 대책입니다.

2000년도 말 인구 및 주택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1995년 이후 5년 동안

총인구가 3.4% 증가한데 반해, 65세 이상 인구는 27.7%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인구 비율은 2030년까지는 23.1%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대비한 노인복지의 제도적 미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는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인 7.7%보다 훨씬 높은 11.7%로서 전국에서 가장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노인문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취업 시책 중에서는 월 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노인취업알선센터가 10개소뿐이고, 노인공동작업장은 10개 시·군에 28개소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공동작업장의 경우 구미지역의 동 단위 14개소를 제외하면 기타 지역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의 운영현황과 운영실적,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원규모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 35,000원에서 50,000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이나 월 8,400원씩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비는 현실에 비추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절 이 나라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오신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각종 경로우대 비용은 지급금액을 대폭 인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사업은 65세 이상의 시설수용자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노쇠한 노인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실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건강진단 수혜의 폭을 기존 시설수용자 외 농촌지역의 70세 이상 모든 노인 분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2년까지 시행해오다 2003년부터 중단된 노인건강강좌도 노인 복지 증진과 사회비용 최소화를 위한 차원에서 다시금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의원은 노인문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특단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학계와 민간단체, 전문연구기관의 관계전문가들을 망라한 가칭 “고령화사회문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반드시 이러한 기구가 설치되어서 1~2년 단위의 단기적인 대책은 물론 5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보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마스트플랜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우리 지역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를 비롯한 23개 시·군이 실버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버타운 조성과 운영 및 예산 확보를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시범사업으로 정착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실버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부채, 국민 1인당 284만원 꼴인 133조 6000억원, 신용불량자 360만명, 전국의 노숙자 5천여명, 금년 하반기 신규사원 채용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전체기업의 78%, 3년 내 기업이 도산 또는 파산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 기업이 전체 기업의 60%, 금년 실질 국내총소득(GDI) 성장률은 작년 대비 0.2%...

본의원이 열거한 이러한 통계자료는 중남미 어느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사회·경제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IMF 이후 최악의 경제불황으로 너나 없이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며, 우리 경북도 예외가 아닙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 8일, 대통령이 주재한 시·도지사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한 100인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할 경우 중앙정부도 그 지원액을 분담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과 특정지역에 한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재정경제부에 예비 신청·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의 189곳, 448개 특구신청 중 경북의 경우, 군위의 전원레저특구, 경주의 전통명주마을 보존·육성특구 등 총 65건을 접수시켰으며, 분야별로는 문화·관광·레저분야 34건, 산업·과학분야 11건, 농림·수산분야 13건, 교육·의료분야 5건, 기타 2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8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특구계획 제출 및 특구 지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몇 개소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선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역경제 활성화대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 기업의 유치 계획과 그간의 유치실적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난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 금년 9월에 발생한 태풍 제14호 「매미」, 그리고 금년 2월 18일,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등의 자연재해와 인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과 안전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안전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도 여지 없이 드러내었는데, 예를 들면 도청을 비롯한 재해대책기관부터 시설과 장비가 손상되거나 정전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신경과 안일함을 증명해 준 것이라 봅니다.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해마다 태풍이 지나가면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만 재해와 재난은 반복되어 왔고 피해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태풍이 지나가도 일본은 피해가 미미한 반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비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치밀한지, 그리고 사전에 예방대책과 복구대책에 대하여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태풍이 오기 며칠 전 태풍의 피해를 경고하고 피해나 집계하며 보상대책이나 만드는 수준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번 태풍이 지나가면 태풍의 피해나 상처가 파악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인재(人災)나 천재(天災)냐를 두고 논란을 벌려야 하는 한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견되었던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 100여명의 인명피해와 1조5천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세계경제 10위권임을 자랑하는 국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면서 아쉽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지금부터 내년도 재해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재난발생에 따른 대응대책뿐 아니라, 주민대피, 비상식량 및 식수공급,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내에서 발생한 재해지역 중에서 2년 이상 반복된 지역과 피해정도를 말씀해 주시고, 반복하여 피해를 입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습침수지역, 위험축대, 산사태발생예상지역, 강·하천범람지역 등의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재해의 긴급한 복구를 위해서는 인명구조분야를 비롯하여 전기, 화재, 가스 등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할 복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 도 만이라도 응급식이나 땀질식으로 재해 대책을 세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치수방재의 기본여건을 확충하고 개선하는데 예산을 투자하여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재난관리체제의 일원화라는 명분으로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제정이나 기획을 하는 중앙부처와는 달리 일선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이 함께 한 부서에서 일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각종 재해 및 재난상황을 신속히 대처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행과 같은 기구와 인력, 그리고 재난관리부서의 기능으로 과연 각종 재난과 재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소방부서와 도본청 행정부서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는 우리 도의 경우 한정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난상황실과 당직실, 소방본부 등 다원체제로 되어있는 현재의 재해대책

시스템을 단일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보는데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인구 문제와 농업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초입인 12월이 시작되는 지금 농촌지역은 막 수확기를 끝내고 흐뭇한 마음으로 한해 동안의 영농수지결산서를 맞추어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둘러본 우리 농촌은 유난히도 심했던 잦은 비와 저온현상, 수해와 태풍으로 추수를 끝낸 지금 1년 동안 애써 지은 농사로 얻은 수확의 기쁨은 커녕 저절로 나오는 한숨소리 속에 주름살의 깊이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도내 많은 농촌지역은 수년 째 밤이 되어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깊은 적막감으로 덮여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 지급, 전입세대 경품증정 등의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농촌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인위적인 수단으로 쉽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너져 가는 농촌, 죽어 가는 농촌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통계청이 얼마 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인구가 10년 사이에 총인구 대비 13%대에서 7%대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농촌인구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것은 유·소년층의 비율이 10년만에 절반이상 줄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농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며, 농촌의 붕괴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마음의 고향이 사라지는 것이며, 결국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정서와 정체성을 허물어 버리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인구문제는 젊은이들이 농촌을 모두 떠났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양하면서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를 가꾸면서 살아 가야할 우리 젊은이들을 누가, 그 무엇이 농촌에서 몰아 내었습니까?

본의원은 아무리 농촌문제, 농업문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농정의 실패

속에 농업인을 무시하는 정부당국이 결국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믿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모두 여섯번의 농가부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농가부채가 줄기는 커녕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농업분야에 무려 6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문자 그대로 물 붓듯이 쏟아 부었지만 농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별로 없고 농민들의 빚은 더욱 무겁기만 합니다.

농가의 농축산물 판매규모가 연간 1,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농가가 전체 농가의 67.25%를 차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도시와 농가의 소득이 비슷한 수준이었던 농가소득이 작년에는 도시근로자의 73%수준으로 추락하였고, 농촌인구는 7.5%에 달하지만 소득은 4%에 불과한 실정이 오늘의 우리 농촌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농업을 별다른 기술이나 지식이 없는 노인들이 경영하는 생산성이 낮은 산업, 그래서 이제부터 도태시켜야 할 하나의 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농정의 기본방향을 농업에서 농업인, 농촌으로 조속히 대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산업중심에서 지역,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농업을 통한 농촌살리기가 아니라 농촌을 살려 농업과 농업인을 살려내자는 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생산성이나 가격경쟁력이 없고 숫자도 적은 농업인들에게 직불제를 확대 도입하는 한편, 저소득 영세소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 많고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해도 생산성이 낮은 농업인들은 설자리가 없어지고 맙니다. 이들 저소득 영세농업인을 적극 배려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농도임을 자처하면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농림부가 주최한 2003 파워브랜드 선정에서 전국에서 선정된 16개 품목 중에서 우리 도는 출품한 12개 품목 중에서 「성주풍경참외」 한가지만 선정되고 나머지 11개 품목은 모두 수상권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공산품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농산물도 유명브랜드, 우수브랜드로 인정받지 못하면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하나만으로도 전국 제일의 농도임을 자처했던 우리 도의 위상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품한 품목들이 수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지역농산물 홍보와 판매의 관건이 되는 브랜드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고품질농업, 고부가가치농업, 수출농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위지역을 비롯하여 우리 도는 사과, 배, 포도 등의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민재해보험이 몇 년 동안 연거푸 발생한 수해로 누적 적자가 커 보험금을 지급하기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원인이야 어디에 있든 정부와 농협을 믿고 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해나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가 앞으로 더 많아져 농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운용, 농업인재해공제제도의 확대 시행, 그리고 농업재해보상법의 제정이 매우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우리 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의 농촌을 황폐한 절망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서기 어린 희망의 땅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정말 5년 뒤, 10년 뒤에 농촌에서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 이기주의나 비합리적인 정치 논리, 산업간의 비교우위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중앙정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주도하여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현실성 있는 시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칭 농촌문제대책특별위원회 등의 전담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와 같은 조직과 인력, 예산 지원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의 부단체장 자체 임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청도군의 부군수 자체 임용과 관련한 도의 사전, 사후 대응방안과 인식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고 골깊은 갈등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다시 폭발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2003년9월3일 청도군에서는 청도군 기획조정실장을 부군수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청도군수는 자체 임명의 변을 통해 “도가 시군에 군립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인사관행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도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제4항에 부단체장 인사권은 시·군·구

기초단체장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1년에서 3년 정년이 남은 부시장·부군수에게 명예퇴직, 공로연수 등을 종용하면서 종전 관행처럼 임명동의를 해오고 있다며 비판했다는 사실입니다.

각 시군 자치단체장들도 다음 인사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제101조제4항을 곱씹어 메모하고 있을 것이며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도청간부급 공무원들이 공언한 모든 제재 수단 중의 하나인 예산 불이익이 이번 본예산에서 청도군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청도군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인사 문제는 자칫 다른 시군에서도 연쇄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압박과 제재의 수단만이 현책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도가 주장하는 시군의 부단체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의5에 규정된 것처럼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은 기본법으로서 임명권의 소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명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이므로 항상 충돌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본의원의 주장이 옳다면 상충된 조항과 규정을 개정할 것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미의 관심사인 앞으로의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 지사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방안이신지, 인사교류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의원은 앞으로 있을 시장·군수들의 부단체장 인사를 지켜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19일, 한국교육개발원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의 초·중·고교생들의 연간 지출 사교육비는 13조6,000억원으로 이는 금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예산 24조9,036억원의 약 55%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00년도의 7조1,276억원에 비해 무려 2배 가량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로 볼 때 우리나라는 '80년대부터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의 교육개혁은 국가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의 성패를 좌우할 학교 교육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분야에 대한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농어촌지역 교육붕괴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내 농어촌지역의 교육 사정은 황폐화하여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학생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중학교만 졸업하면 도시지역으로 전출하고, 교사 역시 현직에 있으면서 임용시험을 통해 대거 도시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그 자리는 계약직 교사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만 해도 중학생중 군위군 218명, 칠곡군 1,141명, 울진군 444명, 봉화군 303명, 고령군 160명, 청송군 72명 등이 인근 도시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군단위 지역의 교육 공동화 현상이 한층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교육 붕괴 현상은 불합리한 학교급지제도에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은 하루빨리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탄탄한 교육인프라 구축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경남의 거창고교와 같이 농촌지역 학교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와 실천 계획, 그리고 추진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교육과 지방자치의 통합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초 정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상호 연관성을 가져야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2005년부터 지방교육과 지방자치를 통합하여 자치단체가 교육부문의 행정과 재정 등을 지원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교육부,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세부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건대 이 방안은 현행 평준화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천하는 방안들이 추진되고 시장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수요자들이 만족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인 듯 합니다. 만약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의 통합이 제도적으로 시행된다면 이것이 현 교육실정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순견 의원(교육환경위원회)

오전부터 동료의원들의 질의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느라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이의근 도지사와 도승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짓는 제183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려고 했던 동해수산연구소 포항분소 폐쇄 문제와 경북교육대학 설립 건은 생략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관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금고 선정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7월1일자로 우리 도는 도금고를 여수신 규모, 자기자본 비율 등의 재무구조의 건전성, 이용의 편리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금고취급의 노하우,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공급 능력,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제일은행에서 농협중앙회로 옮겼으며 경상북도교육청 역시 지난 2002년 11월25일자로 농협중앙회로 옮겼고 금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연장 계약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우리 도와 거래하면서 창출된 수익금을 영농자재 무상공급, 농업인 환원사업, 공익사업, 상품개발, 도 출연사업 지원, 시·군 출연사업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경북도를 위하여 지원하고 기여하였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연간 당기순이익이 도 금고에서 약 80억, 교육청 금고에서 약 60억 등 140억원이 창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현재 농협중앙회의 우리 도를 위한 지원 및 기여는 미흡하다고 판단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농협중앙회는 우리 도 및 교육청과 거래하면서 창출한 순이익금을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그 지원액을 대폭 증액시킬 것을 요구하며 특히 급식조례법이 통과 실시되는 시점에는 국내산 농·수·축산물 중에 경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 급식에 현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농협과 재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는 본위원의 제안을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수용할 의향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실시될 주5일 근무제도로 인하여 여가 및 건강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변화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민의 개인적인 건강증진은 물론 친목과 화합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도 차원에서는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고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생활공원 조성 등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여 왔으며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만여 축구동호인이 참여하는 경북리그는 향후 우리 경북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성공여부를 갈음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은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국비 25억, 도비 27억6,400만원, 시·군비 77억1,430만원, 기금 47억2,830만원 등 총 167억660만원을 투입하여 다섯 개 생활체육공원의 조성사업을 비롯, 50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50개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예산투입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사업으로 경북리그 축구대회를 비롯, 18개 사업에 도비, 기금, 출연금으로 총 17억4,838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회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예산투입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와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기능과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들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생활체육 활성화와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지 그 연계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현대화 방안과 소방정보화 구축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재해 및 재난 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방장비 현대화와 소방정보화의 구축이야말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 소방장비의 보유 부족현황은 고가차 1대, 물탱크차 7대, 굴절차 6대, 화학차 5대, 구급차 8대, 구조차 8대 등 34대이며 보유장비 중에 노후장비는 펌프차 83대, 물탱크차 3대, 고가차 2대, 화학차 1대, 구조차 2대, 구급차 30대, 순찰차 10대, 지프차 10대, 기타 19대 등 총 160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과연 이와 같은 노후장비와 부족한 장비로 현대의 복잡다단한 재해와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차 소방력 보장 5개년 계획으로 금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국비 258억5,250만원, 도비 258억5,250만원 등 총 517억500만원을 투입하여 교체 174건과 신규 135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대비 사업 건수 내역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특히 고층건물 화재 및 산불화재 발생 시에 필수장비라고 볼 수 있는 고가차와 소방헬기의 대폭적인 구입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정보화 추진계획으로 소방전자문서시스템을 금년에 5억원을 투입하고 소방본부 등 39개소에 내년 2월 완료예정이며 2004년 4억3,000만원을 투입 구미소방서 등 53개소에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총 92개소에 대한 각각의 소요예산을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개발지역의 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학교는 매년 취학아동 숫자가 줄어서 학급 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경북도내 포항, 경산, 구미 등 일부지역 특히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은 해당지역의 초등학교가 교실난을 겪고 있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학교의 학생 수 감소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당장 교실난 부족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들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당면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포항시 남구 2동 지역은 신흥 주택개발지역으로 인구가 해마다 증가해 학교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이동초등학교는 인근 대단위 아파트 건설에 따른 초등학생의 수요 예측과 학구조정을 잘못해 교실 수가 크게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초등학교는 정원이 24학급 840명이 적당한 규모이지만 대형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현재 전교생이 1,835명으로 학급수가 무려 43학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부족한 교실난을 해결하기 위해 별관 4층에 7개 교실과 운동장 한 가운데 12개 실을 증축하여 총 19개 실을 2004년 중반까지 완공할 목표로 증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동초등학교의 증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신규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신축과정에 있는 아파트단지를 고려한다면 하루빨리 신설초등학교가 개교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립전 예산배정 및 집행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세출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고 집행부는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서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예산을 의결하는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집행부가 미처 생각 못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의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성립전 예산배정 및 집행현황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에 대해 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도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선 집행한 경우가 2차 추경예산 중 배정금액 262억7,486만원 중 67.5%에 해당되는 177억4,096만원이 선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총 예산 배정의 62%를 차지하는 교육청 본청의 경우 예산배정금액 163억4,550만원 중에 선 집행한 금액이 138억2,214만원으로서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선 집행된 예산입니다.

아무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예산을 배정했다고 하더라도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역별로 격차가 나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미진한 부분을 찾아서 그에 다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도의회의 의결도 없이 선 집행된 예산이 약 67.5%이며 특히 본청의 경우 85%에 이른다는 것은 마치 경상북도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추경과 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교육감께서는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Ⅶ. 5분 자유발언

□ 제1차 본회의

정보호 의원(교육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의근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승희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오늘 5분자유발언 요지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수익금 중 일부를 난치병 학생돕기성금운동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북도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행동적인 노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고 계시는 이의근 지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지사님의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는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결과는 경북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 시설,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관객이 없었다면 실패였다는 판정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엑스포 개관 2개월만인 지난 10월15일 입장객 150만 돌파기념 경품행사에서 총액 얼마의 경품을 걸었는데 공고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은 경품금액이 200만원이나 되었는지요?

총액 대비 몇%나 찾아가지 않았는지, 예견되지 않은 무특정일에 경품행사를 하면서 경품이 있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공고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입장객 유치를 위해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연초부터 여러 기관, 여러 단체와 협의하여 홍보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엑스포조직위원회와 경북교육청이 수차 협의를 거쳐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도교육청은 엑스포조직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각종 회의 때마다 여러 곳에서 홍보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북 도내 거의

모든 학교가 수학여행, 소풍, 서클활동 때 체험학습의 장으로 경품행사를 하면서 경품이 있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입장객의 유치를 위해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연초부터 여러 기관 여러 단체와 협의하여 홍보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엑스포조직위원회와 경북교육청이 수차 협의를 거쳐온 것으로 알고 있고 도교육청은 엑스포조직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따라 각종 회의 때 마다 여러 번, 여러 곳에서 홍보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북 도내의 거의 모든 학교가 수학여행, 소풍, 서클활동 때 체험 학습의 장으로 경주문화엑스포장을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경북도의 학생이 엑스포입장객의 반수는 채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장객 면에서 성공적인 엑스포를 치루었다면 협조에 대한 보상은 있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장객 150만 돌파기념을 위해 거액의 경품비를 쓰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2001년도부터 난치병학생돕기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하여 고사리 같은 어린 학생들의 손으로 현재까지 21억여원으로 많은 학생들이 어린 새싹의 꺼져 가는 생명을 살리고 있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찬 사업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정말 위대한 사업을 우리 경북의 어린 학생들이 해 내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의 성공적인 결과에 학생들의 힘이 있었다면 경북도 학생들의 협조에 보답하고 난치병학생돕기 성금모금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엑스포 수익금의 일부를 난치병학생돕기 성금으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2003경주엑스포결과보고는 11월말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담당자가 인터넷에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빨리 발표하고 그 내용 속에 난치병 학생돕기 성금이 담겨져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호 의원(산업관광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출신 김석호 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경북지역의 교통낙후성을 해소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에 어제 그저께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된 김천, 구미 고속전철역사의 설립발표는 우리 경상북도에 경주와 더불어서 교통 역사가, 고속철도 역사가 두개가 만들어지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의근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또 많은 지역구 국회의원 여러분, 또 우리 최원병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 도민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큰 행복이고 또 이는 앞으로 경상북도의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초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북은 1차 교통망이었던 경부선 철로와 또 2차 교통망이었던 시외버스, 고속버스 노선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대구등 광역 대도시는 지하철, 전철을 3차 교통망으로 채택하여서 이미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2차교통망에서 지금 안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제4차 교통망인 고속철도의 개통은 앞으로 상대적으로 울진이나 청송이나 경북지역의 농어촌지역에 실질적이고 상대적인 교통낙후성을 앞으로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낙후성이 심화되면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자그마치 47.7%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약 60%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는 더욱 더 가속화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탈피하고 또 예천공항과 앞으로 울진공항, 또 문제가 될

포항공항, 경북지역의 교통망을 살리고 또 교통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이 관광산업과 또 경제육성을 위해서는 부득이 새로운 대체교통수단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또 수도권과 비교해서 지방도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접근성입니다.

금년 초에 구미공단에 LG필립스 LCD공장이 파주공장 건립을 결정한 이후에 삼성코닝이 또 이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LG정보통신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평택으로 이전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을 기업, 수도권기업총량제가 없다면 수도권 인근지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바로 교통접근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 김해공항 등과 연계한 경비행기, 노선화된 경비행기의 도입이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대체교통수단을 도입하지 아니하고는 경북의 낙후성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이어질 때 경북의 인구감소는 한국고속철도의 개통과 더불어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화되는 인구감소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북의 조속한 새로운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여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지역의 특성이 관광산업과 경제산업을 육성시키는데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경북에서는 장기적인 교통정책 수립을 해서 새로운 대체교통수단을 만들어 주시고 또 도저히 농촌지역에서 지금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많은 비용의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 현재 노선버스를 버스공영제를 도입해서 봉고차도, 승용차도 주문 받아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공영제를 도입해서 이 시스템을 보완하고 그리고 더욱 더 교통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마련해 주시기를 경상북도에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기 의원(농수산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지난 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김천 고속전철역 설치건의안을 결의해 주시고 이를 중앙에 건의, 이의근 지사께서 건의하셔서 김천 고속전철역이 설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천출신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먼저 올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일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한 후 일부 관계인들이 오해가 촉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문방송에 좋지 않게 비춰진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쳤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와 뜻을 같이 해 주신 결과로 관계인들의 오해였고 본의원의 발언에 별 문제가 없음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로 인하여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염려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해명하느라고 시간과 공력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유언비어로 뭉쳐서 퍼져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일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인사들이 본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그들이 주장한 것과 판이하게 다르니까 본의원이 평소 사석에서 체육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 것처럼 말들을 하고 있는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개인의 명예와 고장과 나라를 위하여 땀흘리는 체육인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현대인은 전쟁영웅보다 체육영웅을 더 우러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그들과 다름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영웅과 영웅이던 사람,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 영웅을 기르는 사람 모두를 존경합니다.

일부 단체가 민의의 전당에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선도위원의 발언을 왜곡하여 비난성명을 발표하면서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하니 이러한 단체들의 압력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민의의 뜻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가 도의 사무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것이 의심이 가서 하는 일입니까? 그 다음의 일을 위하여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의회를 수사기관으로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의원이 서면질문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사업에 있어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과잉된 것은 조정하는 등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시간까지 체육회가 무슨 말을 어떻게 듣고 본의원과 의회에 피해를 주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게 됐는지 그 영문을 모르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해명이 우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지사가 체육회 회장 아니십니까? 그리고 일부 언론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특정단체가 주장한다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대변자 같이 편향보도하면서 근거도 없이 월권 놀부심보 운운하는 등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에게 인격적인 피해까지 주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다면 이 또한 이 지역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심각한 사회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일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혀서 의회의 권위와 본의원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본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두는 바입니다.

의장님! 본의원과 열여덟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발의안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반려하신데 대하여 본의원은 수궁을 할 수 없습니다. 상정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돈이 1~2억 들어간 것입니까? 특위는 꼭 구성되어야 한다는 게 본의원의 지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3차 본회의

황상조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에게 도정발전과 관련 지역의 주요 당면사안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과 관련하여 발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지난달 11월21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 특별조치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로 이제 연구원 설립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연구원의 입지 선정 문제가 대구·경북을 포함한 모든 관련지역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당초에는 대구과학기술원, 경북대 및 지역의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그 후 대구시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신도시 조성사업의 핵심기관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 용역을 포함하여 지난 4월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연구를 수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무엇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현재 추진중인 대구시에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당초 서울과학기술원, 대전과학기술연구원, 광주과학기술연구원에 대응한 대구·경북을 포함한 동남권 전체의 연구개발 허브기능을 담당할 핵심 연구기관으로 장차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주춧돌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국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대경과기원 설립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원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원 입지 선정 용역은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의 대구지역내 입지를 전제로 한 연구용역으로서 연구범위에 대구라는 지리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향후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당초 연구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동남권 전체의 최적 입지라는 주장은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어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구시의 테크노폴리스 용역 결과와 대경과기원의 입지 선정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써 우리 도의회로서는 경북을 연구범위에서 제외한 용역결과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동안 대경과기원의 설립입법 추진에서 핵심 역할을 한 대구시의 국회의원과 교수들조차도 분명히 밝히는 바와 같이 입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대구테크노폴리스 계획과 분리하여 외국이나 제3의 연구기관에 별도의 심도 있는 연구 등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본의원은 연구원 입지 선정에 대하여 설립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외국기관이나 제3의 연구기관에 대구·경북과 뜻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용역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입지 선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 경북도의회와의 협조는 반드시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셋째, 대구·경북의 공동발전과 동남권 전체의 연구개발 허브로서의 기능, 산업기반과 연계한 입지를 물색한다면 새로이 부지조성 등에 경비를 들일 것이 아니라 대구와 인접하고 있으며, 이미 지역 13개 대학과 테크노파크와 진량 자인산업공단이 구성되어 있고, 고속도로 등 기반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는 경산, 그리고 포항은 물론 울산, 경남, 부산 등 동남권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한 곳으로는 본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경산시 일원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경과기원이 비록 당초에 대구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사업이기는 하나, 지역 정가의 지지와 특히 며칠전 경산시와 경산학원도시협의회 구성시 13개 대학 총학장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구원의 경산유치 의지와 열기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한방관련 사업 등 우리 도가 먼저 추진한 지역현안사업에 대구시의 후발참여로 인하여 본의 아닌 피해를 받아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설립은 대구·경북의 공생과 공존 발전을 위하여 법안이 말하는 대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설립의 공정성 확보와 지역유치를 위하여 우리 도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만 3,0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연구원 설립 추진을 위하여 내년 1월에 구성될 연구원설립추진기획단의 본격적인 연구원 설립을 위한 발걸음에 지역 인사의 참여 등 경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따를 것이며, 특히 대구시의원이 참여할 경우 경북도의원도 반드시 대등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과학기술 지방화의 선두 주자로 그동안 우리 도의 경제활성화와 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이의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도내 유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오늘 말씀드린 도의회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을 포함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집행부가 원활하게 연구원 유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지와 지역의 힘을 모아 전폭적인 지원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 : 6건
- 예 산 안 : 2건
- 동 의 안 : 17건

□ 조 례 안 : 6건

-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2. 1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소화”를 각각 “매출”로 한다.

제8조제1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IT, BT 등 지역전략산업 및 주민소득증대사업

제8조제2항 중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3.5%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조건 중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이 선택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융자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2. 3년거치 5년균분상환
3. 3년거치 2년균분상환

제10조의2 중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을 “융자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도지사는 기금운영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기존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융자된 융자금 중 미상환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고지하는 융자금의 상환이율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2. 1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본문 중 “3,629” 를 “3,639” 로 하고, 제4호 중
“78” 을 “88”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2. 1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2. 1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등록”을 “등록 및 관리”로 한다.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전자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정보화담당 부서의 장은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한 전자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중 “공인의 폐기”를 “폐기 및 이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장이 인계받은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2. 1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부동산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이륜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제3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①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
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임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
이 당해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4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할부매입하는 등의 사유로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1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5장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2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삭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 의무기간내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4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2.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제16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3.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제17조(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6장 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

제18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제1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1.취약지대책사업에 따른 독립가옥집단화사업

2.분산농지집단화사업

3.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 및 수해상습지마을 대책사업

③소도읍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1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2조(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광산근로자 및 광산지역복지사업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광산근로자용 사택, 목욕탕, 독서실, 회관 및 공동화장실(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4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5조(기지촌주변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기지촌주변 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개발사업대상자가 정비대상지역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9조(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8장 보 칙

제30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31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경상북도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 12. 31까지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별지서식]

경 상 북 도 세 감 면 신 청 서				처 리 기 간
				7 일
성 명 (법 인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감 면 내 용	세 목	연 도 / 기 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 면 사 유	경 상 북 도 세 감 면 조 례 제 00 조			
경 상 북 도 세 감 면 조 례 제 31 조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위 와 같 이 감 면 받 고 자 신 청 합 니 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서 명) ○ ○ 시 장 (군 수 · 구 청 장) 귀 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2. 1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해당 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 교육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지역(국내포함)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제조·가공된 식품으로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 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및 일정 등급 이상의 표준 규격품을 말한다.

③“식재료 공급자”라 함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④“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경상북도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제4조 (자치단체의 임무) ①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급식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안전성·원산지 등에 대해 의심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접 품질검사를 하거나,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필요시 식재료 공급자의 학교 급식 식재료 판매 내역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신청) ①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를 시·군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시장·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및 방법, 학교 급식 식재료의 공급 방법 등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①식재료 공급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우수 농수축산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식재료 공급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지원 대상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 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농수축산물 공급내역을 시장·군수 가 요구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식재료 공급자가 의무를 해태 하거나 제4조제4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 학기별 지원금 사용 내역을 지역 교육청을 경유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통보 내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통보 의무를 해태 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수정 내용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자치단체의 임무)②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구입 비의 일부를 <u>지원하여야 한다</u>	제4조(자치단체의 임무)②----- ------(생 략)----- ----- ----- <u>지원할 수 있다.</u>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시장·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및 방법, 학교 급식 식재 료의 공급 방법 등 제반 사항을 심 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를 <u>설치하여야 한다.</u>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 ----- ------(생 략)----- ----- ----- ----- ----- <u>설치할 수 있다.</u>

□ 예 산 안 : 2건

-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세입 예산 - 2,744,945,000천 원

- 일반회계(2,201,800,000천 원) : 수정 없음
- 특별회계(543,145,000천 원) : 수정 없음

□ 세출 예산 - 2,744,945,000천 원

- 일반회계(2,201,800,000천 원) : 수정 있음
 - ※ 수정내역 - 붙임과 같음

- 특별회계(543,145,000천 원) : 수정 있음

※ 수정내역 - 경도대학 특별회계 부기조정

- 성과상여금(조교수, 전임강사) : 34,302천 원

→ 성과급연구보조비(조교수, 전임강사) : 34,302천 원

200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증감 조서

【삭감조서】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감 액	비고
		총 계	7,370,500	
	기획관리실	소 계	850,000	
197	"	세계지식포럼 개최지원비	250,000	
78	"	각종단체지원비	600,000	
	경제통상실	소 계	1,850,000	
944	"	시외버스비수익노선지원	1,500,000	
918	"	해양생명환경산업자원센터건립	200,000	
923	"	BT산업사업화기술과제공모사업	100,000	
939	"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50,000	
	자치행정국	소 계	684,000	
197	"	자연보호명예지도원선진외국비교연수	30,000	
202	"	도민공원조성사업	120,000	
188	"	모범공무원배낭여행 여비	50,000	
194	"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	204,000	
228	"	도청어린이집 신축	280,000	
	문화체육관광국	소 계	1,500,000	
1009	"	보문호반축제 개최	30,000	
990	"	제85회 전국체전참가및훈련비등지원	500,000	
1007	"	청도용암온천관광지 조성	510,000	
1007	"	의성탐산온천관광지 조성	450,000	
1009	"	신라호국유적답사코스발굴	10,000	

【삭감조서】

(단위:천 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감 액	비고
	농 수 산	소 계	250,000	
574	"	경북농업신도시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	200,000	
574	"	경북형농업특구기본조사용역비	50,000	
	보건환경산업국	소 계	681,000	
395	"	이동응급의료세트 장비 지원	1,500	
396	"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15,000	
398	"	결핵이동검진차량구입 지원	46,000	
406	"	지방의제 21 추진사업 지원	60,000	
413	"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100,000	
445	"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	12,000	
460	"	수목관찰도감 발간	24,000	
472	"	동물사육실 및 실험실 외부 도색	10,000	
433	"	산불조심모자제작	2,500	
429	"	홈페이지 구축비	10,000	
439	"	왕경도시립조성	400,000	
	사회복지여성국	소 계	84,000	
286	"	민순호의사묘역 등 정비사업	15,000	
314	"	여성정책개발원운영	43,000	
287	"	나자렛집 납골묘 설치	20,000	
315	"	여성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금	6,000	

【삭감조서】

(단위:천원)

[illegible]

【부기조정】

(단위:천원)

[illegible]

【중액조서】

(단위:천 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중 액	비고
		총 계	7,370,500	
	경제통상실	소 계	500,000	
922	"	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법인설립자본금	100,000	
922	"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기반조성실시 설계용역비	200,000	
928	"	중소기업근로자장학문화재단설립지원금	200,000	
	자치행정국	소 계	3,000,000	
201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3,000,000	
	문화체육관광국	소 계	70,000	
1009	"	경북관광홍보관운영 및 해외홍보사업	60,000	
977	"	명륜교실운영지원	10,000	
	사회복지여성국	소 계	1,062,000	
287	"	사회복지관기능보강	20,000	
306	"	마을단위노인회관건립	1,000,000	
313	"	선도보호시설운영지원	6,000	
303	"	후원자·결연아동 만남의 날 행사 2,000,000원 × 4개지역	8,000	
285	"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운영비	10,000	
302	"	구미 글오종합사회복지관학대아동 그룹홈 운영비	10,000	
282	"	교통사고상담지원	8,000	

【증액조서】

(단위:천원)

[illegible]

200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세입 예산

- 예 산 액 : 1,904,622,000천 원
- 수정내역 : 수정없음

☐ 세출 예산

- 예 산 액 : 1,904,622,000천 원
- 수정내역 : 수정있음

※ 수정내역 - 붙임과 같음

200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 증감 조서

【삭감조서】

(단위:천 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감 액	비고
	교 육 청	총 계	1,480,230	
135	"	7차교육과정에 따른 기초기본학습 성취확인자료 개발보급	180,000	
784	"	경북외국어고 냉난방 연료비	100,000	
785	"	학교건물유지관리비	200,000	
785	"	교직원휴게실 설치 및 비품구입	100,000	
985	"	교육위원 해외연수 경비	16,200	
1011	"	교육위원 상해 보상금	3,030	
1014	"	고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116,000	
1079	"	경상교육지원사업비각급기관특별재정 수요지원비	300,000	
1079	"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각급기관특별재정 수요지원비	300,000	
1082	"	본관지하휴게실 환풍장치 공사	20,000	
1012	"	손해배상금(302-01)	100,000	
1060	"	학원설립운영자및강사연수경비보조	10,000	
	총 괄	시책추진업무추진비(10%)	35,000	

【증액조서】

(단위:천 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증 액	비고
	예비비	총 계	1,480,230	

□ 동 의 안 : 17건

- 2004년도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3. 11. 12

나. 제 안 자 : 경상북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3. 11. 12

라. 상정일자 : 제18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3. 12. 2) 상정,질의,토론

마. 의결일자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3. 12. 2)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남성대)

가. 제안이유

-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주거안정을 통한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하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가) 기금명칭 :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

(나) 설치근거 :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다) 설치목적 : 경상북도 소속(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의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맡은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라) 설치년도 : 1993년

(2) 기금조성 및 운용

(가) 기금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말 현재액(A)	2004년도 운용계획			2004년도말 현재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감(B)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816	1,044	866	178	1,994	
• 융자금회수수입		857		857		
• 기금운용이자수입 등		187		187		
• 융자금 대부			860	△860		
• 기금관리비			6	△6		

(나) 재원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

(다) 지원기준

구 분	금 리	용 자 기 간	용 자 신 청	용자한도
주택매입자금 대부	년 3%	대부익월부터 10년	매매(분양) 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	2,000만원
전세자금 대부	〃	대부익월부터 5년	전세 계약일로 부터 2개월이내	1,000만원

(라) 지원대상 : 도소속(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5급이하 공무원으로
대부신청일 현재 5년이상 근속하고 2년이상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무원

3. 검토의견

□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 무주택 하위직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고자, 지난 '93년에 도의회가 주도하여 마련한 기금으로서,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 대부대상과 용도별 지원금액은
 - 신청일 현재 5년이상 근속하는 있는 도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무원에게
 - 주택구입·신축자금은 년 3%의 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부익월부터 10년간 대부하며
 - 전세자금은 년 3%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부익월부터 5년동안 대부하고 있음.
- 2003년 10월말 현재까지 도출연금 4,000백만원 등 5,700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총 601명에게 8,900백만원을 대부하여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04년도중의 기금운용계획은

- 2004년도말 현재액은 1,994백만원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816백만원의 9.8%인 17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수입금 내역은

- 융자회수금 857백만원
- 융자대출금 이자수입 116백만원
- 공공예금 적립금 이자 71백만원이며,

○ 주요 지출금 내역은

- 융자대부금 860백만원
- 기금위탁관리비 6백만원임.

○ 또한 대부계획 인원은 총 56명으로서 주택매입자금은 30명이며, 전세자금은 26명임.

○ 기금운용의 기본재원이 되고 있는 융자금대출이자 수입액이 전년도 예산액 116백만원과 변동이 없는 것은 전년도와 같은 대출 금리(3%)를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공공예금 이자 수입액이 전년도 예산액 85백만원의 16.4%인 13백만원이 감소한 것은 금융기관 예치금 이율이 4%대 이하로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통한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직원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업무수행 능률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이번에 제출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하거나 융자금대출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내역으로는 대부 및 상환 위탁관리비와 융자금, 적립금 등의 고유목적에 집행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지출내역 모두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운용의 소요재원이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년전보다 전세금 또는 아파트분양금액 등의 주택마련 비용이 대폭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개인별 융자 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4년도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3. 11. 12

나. 제 안 자 : 경상북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3. 11. 12

라. 상정일자 : 제18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3. 12. 2) 상정, 질의, 토론

마. 의결일자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3. 12. 2)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여성국장 권양자)

가. 제안이유

- 저소득층 주민, 노인 등의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이들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의 운용 계획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음.

나. 주요골자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가) 기금명칭 :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

(나)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및운용조례

(다) 설치목적

- 저소득주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사업, 자활자립
촉진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을 추진

(라) 설치년도 : 1964년(2000년 생활보호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통합을 위한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2) 기금조성 및 운용

(가) 기금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말 현재액(A)	2004년 운용계획			2004년도말 현재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 감(B)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5,626	257	350	△93	5,533	

(나) 재원조성 : 국비, 도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다) 지원기준

-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융자
 - 융자한도 : 70,000,000원
 - 금 리 : 5%/년
 - 융자기간 : 5년거치 5년균분상환
- 자활공동체의 금융기관대여 사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이율 5%범위내 지원가능)
- 장학금 지급 : 중학생 300,000원/인, 고등학생 500,000원/인

(라)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자금 : 자활공동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학기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미"이상 과목이 40/100이상)

3. 검토의견

□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층 주민, 노인 등의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업과 자활자립의 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64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써
- 2004년도말 현재액은 5,533백만원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5,626백만원대비 1.7%인 93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나타난 수입·지출내역은

○ 수입항목에서

- 공공예금 이자수입 253백만원
- 융자금회수(이자) 3백만원
- 2003이월금(순세계잉여금) 5,62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지출항목에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금 50백만원
- 자활공동체사업 융자금대여 300백만원
- 차년도 이월금으로서 기금적립금 5,533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기금운용의 주요재원이 되고 있는 당해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이 253백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67백만원의 5.2%에 해당하는 14백만원이 감소한 것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예금금리하락에 따라 이자수입이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은

- 주요사업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사업으로는 학업성적이 재적학생의 100분의 40이내에 들어가는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 고등학생은 50명에게 1인당 50만원, 중학생은 83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여 총 133명에게 50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임.

- 또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사업은 300백만원의 사업비로써 6개의 공동체를 선정하여 공동체별로 평균 50백만원씩(대부조건 : 금리 년 5%, 5년거치 5년균분상환) 지원할 계획이며,
- 이러한 자활공동체사업자 금융제도는 2002년도부터 도입된 특수 시책사업으로써 당해연도에는 자활공동체가 설립단계에 있어 신청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 2004년도에는 동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인 자활공동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과 이들 소외계층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운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사회복지기금의 2004년도 수입·지출운용내역은 신규 출연금이 없는 수입항목을 제외하고, 지출내역에서 모든 지출항목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잔액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4년도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3. 11. 12

나. 제 안 자 : 경상북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3. 11. 12

라. 상정일자 : 제18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3. 12. 2) 상정,질의,토론

마. 의결일자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3. 12. 2)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여성국장 권양자)

가. 제안이유

- 재해구호 및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코자 설치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 (가) 기금명칭 :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 (나) 설치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재해구호기금운영관리조례
- (다) 설치목적 : 재해구호 비용부담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의 적립
- (라) 설치년도 : 1972년(조례제정일 1989. 7. 6일)

(2) 기금조성 및 운용

(가) 기금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말 현재액(A)	2004년 운용계획			2004도말 현재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감(B)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14,435	577	743	△166	14,269	

(나) 재원조성 : 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다)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간	지원기준	비 고
•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비 • 토지 또는 건물사용 및 시설·물자의 우선사용에 따른 보상금 •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의 사전집행 •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에 따른 응급 구호지원 • 재해구호물자의 조작 및 운송경비 등	2004.1.1 ~12.31	2004년도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	보건복지부 재해구호 사업 지침

(라) 지원대상 : 한해, 수해, 풍해 등 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내에서 발생한 다수 이재민

3. 검토의견

□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은

- 최근 3년간 지방세 중의 보통세 결산액 평균의 5/1000이상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는 재해구호법 제15조와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조례(조례제정일 : 1989.7.6)에 의거 예기치 못한 한해, 수해, 풍해 등의 재해로 인해 동일한 지역내에서 발생한 이재민을 구호하고, 신속한 재해피해 복구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72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써
- 기금의 2004년도말 현재액은 14,269백만원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14,435백만원대비 1.1%인 16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나타난 수입·지출내역은

○ 수입항목에서

- 공공예금 이자수입 577백만원
- 2003이월금(순세계잉여금) 14,43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지출항목에서

- 생필품 등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 240백만원
- 이재민 구호비 500백만원

- 구호물품 비축창고 운영비(3개소) 3백만원
- 기금적립금 14,269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도비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는 재해구호기금 적립액이 재해구호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 중 보통세액 연평균액의 30/1,000을 초과 하였기 때문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은 577백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46백만원의 10.7%에 해당하는 68백만원이 감소한 것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예금금리하락에 따라 이자수입이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은

- 보건복지부 재해구호사업 지침에 의하여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비,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의 사전집행,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에 따른 응급구호 지원, 재해구호물자 운송경비 등을 집행하고 있으나, 재해구호비 기준을 지역별 피해정도 및 긴급상황 등 현지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므로써 수혜대상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신축성 있는 운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갈수록 기후환경과 기상조건의 변화로 예기치 못한 재해들이 급증하고 피해지역도 대규모화되고 있으므로 재해구호기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재해재난의 예방과 이재민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은 앞으로도 재해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판단되는 바, 동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운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2004년도 운용계획중의 수입항목에서는 전년도 이월금과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모든 지출항목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잔액은 다음년도로 이월 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4년도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3. 11. 12

나. 제 안 자 : 경상북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3. 11. 12

라. 상정일자 : 제18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3. 12. 2) 상정,질의,토론

마. 의결일자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3. 12. 2)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여성국장 권양자)

가. 제안이유

-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과, 장애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협회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 (가) 기금명칭 :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
- (나) 설치근거 :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 (다) 설치목적
 - 경상북도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
 - 장애인 복지단체의 건전한 육성
- (라) 설치년도 : 1997. 8. 13(경상북도 조례 2447호)

(2) 기금조성 및 운용

(가) 기금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말 현재액(A)	2004년 운용계획			2004년도말 현재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감(B)		
경상북도장애인 복지기금	1,765	375	70	305	2,070	

(나) 재원조성 : 도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다) 지원기준

-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지도육성
-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 각종행사 및 장애인 단체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라) 지원대상

- 경상북도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3. 검토의견

□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은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3조,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장애인들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권익향상과 자활의욕을 고양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협회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코자, 지난 1997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20억원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 기금의 2004년도말 현재액은 2,070백만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1,765백만원대비 17.3%인 30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나타난 수입·지출내역은

○ 수입항목에서

- 공공예금 이자수입 75백만원
- 도비 출연금 300백만원
- 2003이월금(순세계잉여금) 1,76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지출항목에서

- 저소득장애 자녀 간접학비 지원 70백만원
- 기금적립금 2,070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출연금 외에 기금운용의 가장 큰 재원이 되고 있는 당해연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이 75백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자수입액 116백만원보다 41백만원이나 감액 계상한 것은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율이 하락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은

- 장애인복지기금은 5년 동안 기금조성만 하다가 2003년도부터 저소득장애 자녀 간접학비 등의 기금목적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당해연도에 70백만원의 사업예산을 계상하게 된 산출근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 2004년도 도비 출연금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300백만원의 기금을 출연함으로써 2004년도에는 조성목표액 2,000백만원을 달성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기금이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협회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재원으로 판단되는 바, 동 기금의 지속적인 확충과 아울러 내실있게 운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 2004년도 지출내역에서는 지출항목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잔액은 다음년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4년도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3. 11. 12

나. 제 안 자 : 경상북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3. 11. 12

라. 상정일자 : 제18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3. 12. 2) 상정,질의,토론

마. 의결일자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3. 12. 2)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여성국장 권양자)

가. 제안이유

- 노인여가시설의 관리·운영,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노인교실 운영 등의 노인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가) 기금명칭 :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

(나)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 조례

(다) 설치목적 : 노인의 복지증진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

(라) 설치년도 : 1994년 1월 12일(조례제정일 1994년 1월 12일, 조례 제2240호), 4차개정 '99.7.12 조례 제2575호

(2) 기금조성 및 운용

(가) 기금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말 현재액(A)	2004년 운용계획			2004년도말 현재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감(B)		
경상북도노인 복지기금	2,466	103	102	1	2,467	

(나) 재원조성 : 도비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다) 지원기준 :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및 지회 육성, 노인들의 건강, 여가,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지도, 노인복지 증진사업

(라) 지원대상 : 경상북도 노인 및 노인단체

3. 검토의견

□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은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의 복지기반을 증진하고,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4년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 기금의 2004년도말 현재액은 2,467백만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2,466백만원대비 0.04%인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나타난 수입·지출내역은

- 수입항목에서
 - 공공예금 이자수입 103백만원
 - 2003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 2,46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지출항목에서
 - 노인회사업 추진 46백만원
 - 민간자본보조(건강기구구입) 56백만원
 - 기금적립금 2,467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적립금을 제외하고 기금운용의 가장 큰 재원이 되고 있는 당해연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이 103백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22백만원의 15.6%에 해당하는 19백만원이 감소한 것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예금금리하락에 따라 이자수입이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은

- 당해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2,466백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2,456백만원의 4.1%인 10백만원이 증가하는 등 기금조성액이 지난해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 세출항목의 고유목적 사업비중에서
 - 노인회 사업은 전년도보다 28.1%가 감액계상되었고, 건강기구 구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는 바 이는 최근들어 이자율의 대폭 하락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원인으로
 - 앞으로는 기금 적립액을 점차 확충하는 한편, 지금까지 적립만 해 놓고 있는 시군의 노인복지 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 노인의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노인협회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재원으로 판단되는 바, 동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운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2004년도 운용계획에 있어서 지출내역은 항목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계상 하였거나 집행잔액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4년도 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3. 11. 12

나. 제 안 자 : 경상북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3. 11. 12

라. 상정일자 : 제18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3. 12. 2) 상정,질의,토론

마. 의결일자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3. 12. 2)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여성국장 권양자)

가. 제안이유

-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가) 기금명칭 : 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

(나) 설치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 운영조례

(다) 설치목적 :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재원마련

(라) 설치년도 : 1999년

(2) 기금조성 및 운용

(가) 기금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말 현재액(A)	2004년 운용계획			2004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감(B)		
경 상 북 도 여성발전기금	2,200	591	-	591	2,791	

(나) 재원조성 : 도 출연금 및 기금운영수익금

(다) 지원대상

- 여성능력개발 및 권익증진 사업의 지원
- 건전한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 여성관련시설 및 운영의 지원 등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신현의)

□ 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은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9년도에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 기금의 2004년도말 현재액은 2,791백만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2,200백만원대비 26.9%인 59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나타난 수입·지출내역은

- 수입항목에서
 - 공공예금 이자수입 91백만원
 - 도비 출연금 500백만원
 - 2003이월금(순세계잉여금) 2,20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지출항목은 조성 기금액인 2,791백만원 전액을 기금전출금(기금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음.

□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은

- 여성발전기금은 지난 '99년부터 오는 2004년도까지 6개년동안 총 3,000백만원을 조성할 목표를 세워 추진해 왔으나 2003년까지 총 2,000백만원의 기금을 출연하는데 그쳤으며,
- 2004년도에도 전년도 수준인 500백만원만을 신규 출연하게 되면 당초 조성목표액의 83.3%인 2,500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 이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기금조성을 완료해야 할 마지막 해인 2004년도에도 당초 설정한 기금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하기가 다소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향상과 함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활발한 사회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고유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확보를 위한 보다 안정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등 여성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여건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판단되는 바, 동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운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며,
 - 2004년도 운용계획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4년도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11월 10일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3년 11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18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환경위원회
(2003년 12월 3일 상정 · 질의 · 토론 ·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기금내역

- 기금명칭 : 식품진흥기금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71조,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
- 설치년도 : 1989. 1. 1(조례 제2675호, 2001. 1. 4)
- 기금용도

- 식품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 등

○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3년도말 현재액 (A)	2004년 운용계획			2004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식품진흥기금	14,457	3,345	3,989	△644	13,813	

○ 재원조성 :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

○ 지원기준

구 분	금리	융자기간	융자비율	융 자 한 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금	연 3% (화장실 연1%)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 : 5천만원 • 식품접객업 등 : 3천만원 • 화장실(별도) : 1천만원 • HACCP 적용업소 : 2억원

※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 식재료의 구매·검수·보관 및 조리·운반·배식·세척 등 관리 기준을 말함.(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4. 기금운용 내용

○ 자금수지 총괄 <표 1>

-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 161억 7천 3백만원 보다 16억 3천만원(10.1%)이 증액된 178억 3백만원임.

〈표 1〉

자금수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증감율(%)
수입 · 지출	17,803	16,173	1,630	10.1

○ 수입 예산에서 〈표 2〉

• 이자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31.6% 감액된 6억 9천 7백만원으로
기금 적립금 및 융자금 이자임.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9.0% 증액된 144억 5천 7백만원으로
2003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임

• 융자금 원금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36.9% 증액된 20억 1백만원으로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융자금 회수 수입임

• 잡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50% 증액된 6억 4천 8백만원으로
과징금 수입금임 (약 600건)

〈표 2〉

수 입 예 산 내 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증감율 (%)
계	17,803	16,173	1,630	10.1
이 자 수 입	697	1,019	△322	△31.6
순세계 잉여금	14,457	13,261	1,196	9.0
융자금 원금수입	2,001	1,461	540	36.9
잡 수 입	648	432	216	50

○ 지출 예산액은 〈표 3〉

○ 경상예산은

-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5.9% 증액된 4억 9백만원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행사 경비 보상금임.

○ 사업예산에서는

-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8% 감액된 35억원으로 일반업소 및 HACCP 시설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금과 식품분석 장비 구입비임.

○ 기타 내부거래는

- 기금 적립금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6% 증액된 138억 1천 3백만원으로서 융자금 확대에 따른 기금적립금임.

○ 예비비 및 반환금기타에서

- 예비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41.7% 감액된 7천만원이며
- 반환금기타는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57.1% 증액된 1천 1백만원임.

〈표 3〉

지출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
계		17,803	16,173	1,630	10.1
경 상 예 산		409	246	163	65.9
사업예산	소 계	3,500	3,639	△139	△3.8
	연구개발비	0	30	△30	
	민 간 이 전	370	209	1613	77.0
	자치단체등 자 본 이 전	20	0	20	
	자산취득비	310	0	310	
	융 자 금	2,800	3,400	△600	△17.6
기타내부거래		13,813	12,161	1,652	13.6
예 비 비		70	120	△50	△41.7
반 환 금 기 타		11	7	4	57.1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수입예산 부문

○ 기금 증식을 위한 방안 강구

- 2003. 11. 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통화 정책 방향은 최근 5년간 최저인 현 금리 수준(4~5%대 : 03. 11월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내 경제관련연구소에서는 향후 금리가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 본 기금의 적립금 운용 계획은 13.6% 증액된 반면 이자 수입은 오히려 31.5% 감소되는 것으로
- 이는 정부 및 경제관련 연구소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 및 지표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본 기금 이자수입에 대해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으며
- 또한 기금 적립은 금융기관별로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적립 방법과 적립기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립금 이자가 최대로 발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출예산 부문

○ 기금 지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 의결후 금융기관 대출시 대상자가 탈락되어 행정의 신뢰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의 기준 및 대출금액 등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원기금 용도 외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지원기금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의 시설개선 등을 위한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융자 한도가 2억원으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 개선에 투자되는지에 대한 사실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발굴노력

-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연구, 식품업소 서비스 향상, 우수
-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 잉여식품 재활용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발굴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7. 토론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4년도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11월 10일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3년 11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18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환경위원회
(2003년 12월 3일 상정 · 질의 · 토론 ·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기금내역

- 기금명칭 : 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
- 설치근거 : 경상북도포플라장학회 운영조례
- 설치목적 : 학업 및 예체능우수, 산림유공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
- 설치년도 : 1976년도 (조례 제790호, 1976. 11. 22)
-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3년도말 현 재 액(A)	2004년 운용계획			2004년도말 현 재 액(A+B)
		수 입	지 출	증 감(B)	
경상북도포플라 장 학 기 금	219	9	9	0	219

- 재원조성 : 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 지원기준 : 매년 중 · 고등 학비 기준(중 · 고등 각각 400천원)

○ 지출 내역은 〈표 3〉

○ 일반보상금에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25% 감액된 9백만원으로서 학업 우수·산림유공 자녀 등 23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급한 장학금이며

○ 기타 내부거래는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1.4% 증액된 2억 1천 9백만원으로 기금 적립금임

〈표 3〉

지 출 내 역

(단위: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계	228	228		
일반보상금	9	12	△3	△25
기타 내부거래	219	216	3	1.4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수입예산 부문

○ 기금 증식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

- 동 기금의 수입원은 이자수입에 절대 의존하고 있어 저금리 시대 기금 증식 수단으론 부적합하므로, 기금 증식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및 유사 기금과의 통합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지출예산 부문

○ 장학금 지급 대상 범위 재고 및 공정한 선발에 대한 의견

- 본 기금 장학금으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2004년도부터는 중학교 전면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현재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분기별 수업료가 평균 25만원으로 장학금 1인당 40만원은 실질적인 도움엔 다소 부족하므로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중학생은 제외하고 고등학생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본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장학금 지급 적격자 선발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7. 토론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4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 농수산국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3. 11. 12

나. 제 안 자 :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3. 11. 12

다. 상정일자 : 2003. 12. 2

(제18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 : 농수산국장 임 광 원

나. 제안이유

2004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4.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1) 기금명칭 : 농어촌진흥기금

(2) 설치근거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2677호)

(3) 설치목적 : 지역농수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
와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위주의 지원으로 지역농
어업의 경쟁력 제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1지역
1명품육성 및 품질향상 도모

(4) 설치년도 : 1993년 (2001. 1. 4 전면개정)

나.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말 현재액(A)	2004년 도 운 용 계 획			2004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감(B)		
농어촌진흥기금	43,041	12,969	17,304	△ 4,335	38,706	
농어촌발전기금	40,920	10,703	15,000	△ 4,297	36,623	
농수산물유통기금	1,307	1,629	1,703	△ 74	1,233	
1지역1명품육성기금	814	637	601	36	850	

(2) 재원조성 : 출연금, 이자수입, 융자금 상황

○ 농어촌발전기금(10,703백만원) : 출연금 1,500, 융자회수금 7,848
적립금이자 1,355

○ 농수산물유통기금(1,629백만원) : 융자회수금 1,619, 적립금이자 10

○ 1지역1명품육성기금(637백만원) : 융자회수금 633, 적립금이자 4

(3) 지원기준

구 분	금리	용 자 기 간	용 자 비 율	용 자 한 도
농 어 촌 발전기금	2.5%	3년거치7년균분상환	· 시설자금	· 개인 1억원
	2.5%	3년거치7년균분상환	· 벤처농업육성자금	·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민조직, 수출 업체 2억원
	2.5%	2년거치3년균분상환	· 수출자금	
	3.0%	1년거치2년균분상환	· 운영자금	· 농·수·축협 및 특수조합 5억원
농수산물 유통기금	3%	1년거치2년균분상환	· 농수산물직판사업, 산지매취사업, 전통식품개발 및 산지가공사업 등 농수산물유통사업에 필요한 자금	· 업체당 1억원 이내
1지역1명품 육성기금	2%	2년거치3년균분상환	· 1지역1명품단지확대 조성 및 판 촉홍보사업에 필요한 자금	· 업체당 1억원 이내

(4) 지원대상

- 농어촌발전기금 : 농수산업 시설장비현대화사업, 농어촌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 대체작목개발과 생산시범사업, 품목별 수출협업단지육성 및 농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 산업육성사업, 벤처농업육성사업, 기타 농어촌구조개선에 필요한 사업
- 농수산물유통기금 : 농수산물직판사업, 산지매취사업, 전통식품개발 및 산지가공사업 등 농수산물유통사업
- 1지역1명품육성기금 : 고유브랜드, 포장디자인 및 용기개발, 품질개선, 시설자동화 및 확충, 가공원료확보, 기술개발 등

5.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내용

가. 자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 감 율 (%)
수입 · 지출	56,010,708	82,045,107	△26,034,399	△ 31.7

⇒ 200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20억4천5백만원의 31.7%인 260억3천4백만원 감액된 560억1천1백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발전기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 감 율 (%)
수입 · 지출	51,623,394	78,048,380	△26,424,986	△33.8

(2) 농수산물유통기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 감 율 (%)
수입 · 지출	2,935,920	3,175,922	△ 240,002	△ 7.6

(3) 1지역1명품육성기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 감 율 (%)
수입 · 지출	1,451,394	820,805	630,587	76.8

나. 수입계획 총괄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 감 율 (%)
계	56,010,708	82,045,107	△ 26,034,399	△ 31.7
· 전년도 이월금	43,041,195	54,331,199	△ 11,290,004	△ 20.8
· 출 연 금	1,500,000	1,500,000	0	-
· 용 자 회 수	10,100,613	24,455,280	△ 14,354,667	△ 58.7
- 원 금	8,855,918	23,972,644	△ 15,116,726	△ 63.1
- 이 자	1,244,695	482,636	762,059	157.9
· 적립금 이자	1,368,900	1,758,628	△ 389,728	△ 22.2

⇒ 전년도예산액 820억4천5백만원의 31.7%인 260억3천4백만원이 감액된 560억1천1백만원으로

○ 전년도 이월금 430억4천1백만원

○ 출연금 15억원

○ 융자금 회수액 101억1백만원

○ 적립금 이자 13억6천9백만원이며, 기금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발전기금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 감 율 (%)
계	51,623,394	78,048,380	△ 26,424,986	△ 33.9
· 전년도 이월금	40,919,848	52,573,203	△ 11,653,355	△ 22.2
· 출 연 금	1,500,000	1,500,000	-	-
· 용 자 회 수	7,848,546	22,225,177	△ 14,376,631	△ 64.7
- 원 금	6,718,388	21,855,814	△ 15,137,426	△ 69.3
- 이 자	1,130,158	369,363	760,795	206
· 적립금 이자	1,355,000	1,750,000	△ 395,000	△ 22.6

(2) 농수산물유통기금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 감 율 (%)
계	2,935,920	3,175,922	△ 240,002	△ 7.6
· 전년도 이월금	1,306,879	1,511,129	△ 204,250	△ 13.5
· 용 자 회 수	1,618,741	1,659,786	△ 41,045	△ 2.5
- 원 금	1,534,200	1,575,500	△ 41,300	△ 2.6
- 이 자	84,541	84,286	255	0.3
· 적립금 이자	10,300	5,007	5,293	105.7

(3) 1지역1명품육성기금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 감 율 (%)
계	1,451,394	820,805	630,587	76.8
· 전년도 이월금	814,468	246,867	567,599	229.9
· 용 자 회 수	633,326	570,317	63,009	11.0
- 원 금	603,330	541,330	62,000	11.5
- 이 자	29,996	28,987	1,009	3.5
· 적립금 이자	3,600	3,621	△21	△0.6

다. 지출계획 총괄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 감 율 (%)
계	56,010,708	82,045,107	△26,034,399	△31.7
· 물 건 비	4,600	11,000	△6,400	△58.2
· 용 자 금	17,300,000	29,700,000	△12,400,000	△41.8
· 다음년도이월금	38,706,108	52,334,107	△13,627,999	△26.0

⇒ 2004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도예산액 820억4천5백만원의 31.7%인 260억3천4백만원이 감액된 560억1천1백만원으로

- 물건비 5백만원
- 용자금 173억원
- 다음년도 이월금 387억6백만원이며, 기금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발전기금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 감 율 (%)
계	51,623,394	78,048,380	△26,424,986	△33.9
· 용 자 금	15,000,000	27,400,000	△12,400,000	△45.3
· 다음년도이월금	36,623,394	50,648,380	△14,024,986	△27.7

(2) 농수산물유통기금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 감 율 (%)
계	2,935,920	3,175,922	△240,002	△ 7.6
· 물 건 비	3,400	8,000	△4,600	△57.5
· 용 자 금	1,700,000	1,700,000	-	-
· 다음년도이월금	1,232,520	1,467,922	△235,402	16.0

(3) 1지역1명품육성기금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 감 율 (%)
계	1,451,394	820,805	630,589	76.8
· 물 건 비	1,200	3,000	△1,800	△60.0
· 용 자 금	600,000	600,000	-	-
· 다음년도이월금	850,194	217,805	632,389	290.3

6. 전문위원 검토의견

먼저 수입예산 부문은

- 당초 조성목표액이 도의 재정여건상 집행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금리하락 등으로 인하여 기금이자수입 마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 반면 농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비출연금 증액등 기금증식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출예산 부문은

- 전년대비 31.7% 감소한 560억 1천 1백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부터 도비출연금의 대폭 감소 등 수입예산 감소에 따른 감액편성으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농산물 시장개방과 내년으로 임박한 쌀 재협상, 각종 재해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 집행목표액 만큼의 기금이라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특히 각종 재해발생 시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기금을 공적 자금화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사료되며, 기금운용계획안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9. 소수의견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4년도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 농업기술원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3. 11. 12

나. 제 안 자 :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3. 11. 12

다. 상정일자 : 2003. 12. 3

(제18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 : 농업기술원장 전 한 식

나. 제안이유

2004년도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
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4.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1) 기금명칭 :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2) 설치근거 :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2387호)

(3) 설치목적 :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

(4) 설치년도 : 1996년 4월 8일

나.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말 현재액(A)	2004년 도 운 용 계 획			2004년 도 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감(B)		
농업인학습단체육성	1,503	77	80	△3	1,500	

(2) 재원조성 : 도출연금 및 이자수입

(3) 지원기준 : 도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및 산하단체 육성, 교육 연찬, 각종대회 등

(4) 지원대상 : 농촌지도자경상북도연합회, 경상북도생활개선회

5.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내용

가. 자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 감 율 (%)
수입·지출	1,580,252	1,594,206	△ 13,954	△ 0.9

⇒ 200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5억9천4백만원의 0.9%인 1천 4백만원이 감액된 15억8천만원입니다.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 감 율 (%)
계	1,580,252	1,594,206	△ 13,954	△ 0.9
전년도 이월금	1,503,461	1,507,000	△ 3,539	△ 0.2
적립금 이자	64,768	76,199	△ 11,431	△15.0
기 타	12,023	11,007	1,016	9.2

⇒ 이월금은 전년도예산액 15억7백만원의 0.2%인 3백5십만원이 감액된 15억 3백만원으로 이는 기금원금 15억원(농촌지도자회 10억원, 생활개선회 5억원)과 사용잔액 3백만원이며,

⇒ 적립금 이자는 전년도 예산액 7천 6백만원의 15%인 1천 1백만원이 감액된 6천 5백만원으로 금리인하 등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 기타수입 1천2백만원은 전년도 예산집행 후 사용잔액으로 판단됩니다.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 감 율 (%)
계	1,580,252	1,594,206	△ 13,954	△ 0.9
고유목적사업비	80,252	89,085	△ 8,833	△ 9.9
다음년도이월액	1,500,000	1,505,121	△ 5,121	△ 0.3

⇒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8천 9백만원의 9.9%인 9백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으로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개선회 육성지원 보조금입니다.

⇒ 다음년도 이월액은 전년도예산액(15억5백만원) 보다 5백만원 감액된 15억원으로 기금적립 원금 15억원입니다.

6. 검토의견

- 농산물시장 개방등 국내외적인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인 단체의 요구사항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반면 금리하락으로 인하여 기금 이자수입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농업인단체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도 감소되고 있는 관계로 이자수입 감소분 만큼의 금액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기금을 지원 받고 있는 농업인단체 스스로도 행사성 경비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운용계획안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9. 소수의견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4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1. 12.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3. 11. 12
 다. 상정일자 : 제183회 도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관광위원회(2003.12.2) 상정,질의.토론
 라. 의결일자 : 2003. 12. 2 제183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관광위원회

2.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져 함.

3.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3년도말 현재액(A)	2004년 운용계획			2004년도말 현재액(A+B)
		수입	지출	증감(B)	
계	84,551	54,786	88,249	△ 33,463	51,088
• 창업및경쟁력 강화사업자금	18,674	49,133	67,647	△ 18,514	160
• 운전자금	50,611	3,524	3,500	24	50,635
• 유통업경쟁력 강화사업자금	15,266	2,129	17,102	△ 14,973	293

나. 재원조성 및 지원대상

- 재원조성 : 정부융자금 및 도·시군 출연금, 기타 기금운용수익금 등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중소유통업자) 및
 관련 조합, 단체

4.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천 원)

항목 별	예산액(안)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A/B)		비 고
			금액	대비(%)	
합 계	139,337,042	125,172,037	14,165,005	111.3	
이자수입 (정기예금 및 융자금회수금이자)	9,794,331	9,873,691	△ 79,360	99	
전입금 (창업및경쟁력자금 과 운전자금)	9,000,000	8,000,000	1,000,000	113	
융자금 원금수입 (융자금회수금)	18,492,208	17,087,820	1,404,388	108	
순세계잉여금 (적립금이월금)	84,550,503	71,710,526	12,839,977	118	
재특자금차입금 (창업및경쟁력자금)	17,500,000	18,500,000	△ 1,000,000	95	

나. 지출 계획

(단위:천 원)

항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A/B)		비고
			금액	대비 (%)	
합 계	139,337,042	125,172,037	14,165,005	111.3	
중소기업육성	121,941,764	114,732,446	7,209,318	106	
• 민간이전 (운전자금이자보전)	3,500,000	3,500,000	0	100	
• 차입금이자 (창업및경쟁력자금)	2,768,216	2,743,092	25,124	101	
• 융자금 (창업및경쟁력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51,000,000	42,000,000	9,000,000	121	
• 차입금원금상환 (창업및경쟁력자금)	13,878,800	16,199,800	△ 2,321,000	86	
•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50,794,748	50,289,554	505,194	101	
중소유통개선	17,395,278	10,439,591	6,955,687	167	
• 차입금이자 (이자상환)	375,837	465,658	△ 89,821	81	
• 융자금 (유통업경쟁력자금)	7,000,000	8,500,000	△ 1,500,000	82	
• 차입금원금상환	9,726,000	1,230,400	8,495,600	790	
•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293,441	243,533	49,908	121	

5. 검토의견(전문위원 : 김종태)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운전자금, 창업자금, 시장재개발, 공동창고설치 자금 등 중소기업육성 및 유통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 2004년도 수입계획을 보면
 - 적립금의 정기예금 및 융자금회수금이자 97억 7,943만원
 - 도비출연금 90억원(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 75억, 운전자금 15억)
 - 융자금 회수금 185억 9,220만원
 - 적립금 이월금 845억 5,050만원
 - 재특자금차입금 175억원(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기금 총 수입금이 1,393억 3,704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 중소기업육성사업에 1,219억 4,176만원으로
 - 운전자금이자보전 35억원
 - 차입금 이자 상환 27억 6,821만원(창업및경쟁력자금)
 - 융자금 510억원(창업및경쟁력자금, 벤처육성자금)
 - 차입금 원금 상환 138억 7,880만원(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 기타 운전자금등 적립금 507억 9,474만원이며

- 중소기업개선사업에 173억 9,527만원으로

- 차입금 이자 상환 3억 7,583만원
- 융자금 70억원(유통업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 차입금 원금 상환 97억 2,600만원
- 기타 적립금으로 2억 9,344만원.

- 국제경기침체 및 중국 등 후발국의 약진, 노사안정 문제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어, 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 중소기업도 대형점포의 지방 진출로 인하여 재래시장, 중소형 점포 등은 경쟁력을 상실하는 등 지역상권에도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봄.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은 중소기업 및 유통업 활성화를 위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고 보여지며, 적립금에 대하여는 은행금리 하락에 따라 이자발생이 적어 가용금액이 줄어들고 있어 고수입금융상품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재특자금 차입금도 융자실적 등을 감안 적정액을 차입하는 등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7.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4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1. 12.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3. 11. 12
 다. 상정일자 : 제183회 도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관광위원회(2003.12.2) 상정,질의.토론
 라. 의결일자 : 2003. 12. 2 제183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관광위원회

2.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져 함.

3.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2003년도말 현재액(A)	2004년 운용계획			2004년도말 현재액(A+B)
	수입	지출	증감(B)	
3,280	131	100	31	3,311

나. 재원조성 및 지원대상

- 재원조성 : 대출연금 및 기금운용 이자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근로자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4.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천 원)

항목별	예산액(안)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A/B)		비고
			금액	대비(%)	
합계	3,411,268	3,276,783	134,485	104	
이자수입 (기금적립금이자)	131,202	120,161	11,041	109	
전입금 (도비 출연금)	0	600,000	△ 600,000	-	
순세계잉여금 (기금 이월금)	3,280,066	2,556,622	723,444	128	

나. 지출 계획

(단위:천 원)

항목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고
			금액	대비(%)	
합 계	3,411,268	3,276,783	134,485	104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100,000	0	100,000	-	
기타내부거래 (기금적립금)	3,311,268	3,276,783	34,485	101	

5. 검토의견(전문위원 : 김종태)

-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고취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조례로 설치한 근로자자녀장학기금은 30억원을 목표로 '98년부터 매년 적립하여 현재 32억 8,0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 2004년도 운용 총규모가 34억 1,127억원으로 수입은 적립금 이자 1억 3,120만원과 순세계잉여금(기금이월금) 32억 8,006만원이며, 지출은 총1억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고등학생 1인당 100만원씩 66명, 대학생 1인당 200만원씩 17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기금적립금 33억 1,126만원으로 할 계획임
- 이는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이자 정도에서 장학금으로 지출하여 기금의 적정운영을 기하도록 편성되었으나, 기금이자가 소액으로 수혜대상이 83명에 불과하므로 학생선발에 있어서 지역별, 업종별 고르게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기금이 적립금 이자로 운영되는 만큼 은행권의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는 감안하여 고수익 상품 적립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7.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4년도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1. 12.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3. 11. 12

다. 상정일자 : 제183회 도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관광위원회(2003.12.3) 상정,질의.토론

라. 의결일자 : 2003. 12. 3 제183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관광위원회

2.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져 함.

3.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2003년도말 현재액(A)	2004년 운용계획			2004년도말 현재액(A+B)
	수입	지출	증감(B)	
4,408	420	420	0	4,408

나. 재원조성 및 지원대상

- 재원조성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지원금, 이자수익 등
- 지원대상 : 도내 문화예술단체로서 2년이상 활동실적이 있는자

4.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천 원)

항목 별	예산액(안)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A/B)		비 고
			금 액	대 비(%)	
합 계	4,827,842	4,839,598	△ 11,756	99.8	
이자수입 (기금적립금)	180,000	220,000	△ 40,000	82	
순세계잉여금 (전년 이월금)	4,407,842	4,379,598	28,244	101	
국고보조금 (중앙기금지원금)	240,000	240,000	0	100	

나. 지출 계획

(단위:천 원)

항목 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A/B)		비 고
			금 액	대 비(%)	
합 계	4,827,842	4,839,598	△ 11,756	99.6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420,000	438,000	△ 18,000	96	
기타내부거래 (기금적립금)	4,407,842	4,401,598	6,244	100.1	

5. 검토의견(전문위원 : 김종태)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 2004년도 기금운용 재원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문예진흥기금과 적립금의 이자로서,
 - 수입내역을 보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중앙기금지원금 2억 4,000만원, 기금적립금 이자 1억 8,000만원으로 총 4억 2,000만원이며,
 - 지출은 동호인 모임 등 소규모예술단체 등에 사기진작 및 관심제고, 자금심 고취 등의 차원에서 문화예술단체활동지원금으로 4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함.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의 범위내에서 지출되므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짐.
- 그러나 앞으로 은행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을 고려하여 고수의 상품 기금적립과 중앙기금 증액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지원금 배분시에도 단체별로 적정한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7.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4년도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1. 12.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3. 11. 12
 다. 상정일자 : 제183회 도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관광위원회(2003.12.3) 상정,질의.토론
 라. 의결일자 : 2003. 12. 3 제183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관광위원회

2.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져 함.

3.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2003년도말 현재액(A)	2004년 운용계획			2004년도말 현재액(A+B)
	수입	지출	증감(B)	
13,363	1,258	600	658	14,021

나. 재원조성

- 재원조성 : 자치단체출연금, 도체육회 출연금, 이자수입 등

4.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천 원)

항목별	예산액(안)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A/B)		비고
			금액	대비(%)	
합계	14,620,645	14,002,096	618,549	104.4	
이자수입 (기금적립금)	607,709	653,658	△45,949	93	
기금전입금 (자치단체출연금)	650,000	650,000	0	100	
순세계잉여금 (전년이월금)	13,362,936	12,698,438	664,498	105	

나. 지출 계획

(단위:천 원)

항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A/B)		비고
			금액	대비(%)	
합 계	14,620,645	14,002,096	618,549	104.4	
민간이전 (우수선수육성등 체육회사업지원)	600,000	650,000	△50,000	92	
기타내부거래 (기금적립금)	14,020,645	13,352,096	668,549	105	

5. 검토의견(전문위원 : 김종태)

- 우리도의 체육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서 현재 133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으며, 조성재원은 기금이자와 자치단체출연금 등으로 하고,
- 2004년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수입 6억 770만원과 도출연금 6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기금이월금) 133억 6,293만원이며, 지출은 대학교 우수선수 육성 등 지원사업에 6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립할 계획임.
- 금년 전국체전에서 상위 입상을 하는 등 우리도의 위상과 도민의 사기를 더 한층 높여 체육발전을 위한 많은 투자와 우수 선수확보 등이 계속 필요하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도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도출연금과 이자 범위 내에서 지출코자 하므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였다고 보여지나, 앞으로 적립금 확충과 적립금 이자 확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7.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4년도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1. 12. 경상북도지사
- 나. 회부일자 : 2003. 11. 12
- 다. 상정일자 : 제183회 도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관광위원회(2003.12.3) 상정,질의.토론
- 라. 의결일자 : 2003. 12. 3 제183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관광위원회

2.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져 함.

3.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2003년도말 현재액(A)	2004년 운용계획			2004년도말 현재액(A+B)
	수입	지출	증감(B)	
3,293	131	126	5	3,298

나. 재원조성 및 지원대상

- 재원조성 : 국가,자치단체출연금, 기타이자수입 등
- 지원대상 : 청소년학자금, 근로청소년 장학금, 청소년상담
활성화,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 지원 등

4.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천 원)

항목별	예산액(안)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A/B)		비고
			금액	대비(%)	
합계	3,424,270	3,450,654	△ 26,384	99.2	
이자수입 (기금적립금)	130,933	183,936	△ 53,003	71	
순세계잉여금 (적립금 이월)	3,293,337	3,266,718	26,619	101	

나. 지출 계획

(단위:천 원)

항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A/B)		비고
			금액	대비(%)	
합계	3,424,270	3,450,654	△ 26,384	99.2	
일반보상금 (장학금및학자금)	92,000	100,000	△ 7,400	93	
민간이전 (청소년상담 등 활성화사업지원)	34,000	56,000	△ 22,000	61	
기타내부거래 (기금적립금)	3,297,670	3,294,654	3,016	100.1	

5. 검토의견(전문위원 : 김종태)

-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경상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서 모범 청소년의 장학 사업, 청소년수련활동지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하며,
- 2004년도 수입계획은 적립금이자 1억 3,093만원과 순세계잉여금 (기금이월금) 32억 9,33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으로 1인당 800만원씩 90명,
산업체 특별학교의 근로청소년 장학금 1인당 20만원씩 80명,
청소년 대상 장학금,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연수,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
활성화 사업 등에 총 1억 2,66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코자 함.
- 기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되므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많은 투자와
관심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7.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4년도 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가. 건설도시국 : 2004년도 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3. 11. 12.

나. 회부일자 : 2003. 11. 12.

다. 상정일자 : 2003. 12. 2.(제183회 도의회 제2차장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3.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 기금명칭 : 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
- 설치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경상북도재해대책운용조례
- 설치목적 : 재해위험요소의 사전 예방적 보수·정비와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적립
- 설치년도 : 1996. 11. 8(1998. 12.31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면개정)

나.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말 현재액(A)	2004년 운용계획			2004년말 현재액(A+B)	비 고
		수입	지출	증감(B)		
재해대책 기 금	6,710	2,972	1,342	1,630	8,340	

- 재원조성 :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도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 지원기준

- 기금조성액의 50%이내 운용
- 지방하천 보수·보강사업 : 지방 1급 100%, 지방 2급은 50%

○ 지원대상

-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 등의 정비사업
-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중 배수펌프 및 하수관거사업
- 수리시설중 배수장, 용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사업

4.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계	9,682	9,682	7,769	7,769	1,913	24.6%	1,913	24.6%

나. 세입·세출 예산개요

(1)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 감	비 고
관	항				
합 계		9,682	7,769	1,913	24.6
경상적 세외수입	소계	288	224	64	28.5
	이 자 수 입	288	224	64	28.5
임시적 세외수입	소계	9,394	7,545	1,668	28.3
	순세계잉여금	6,710	5,012	1,698	33.8
	전입금	2,684	2,533	151	5.9

(2)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과 항	목 세항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 감	비 고
합	계	9,682	7,769	1,913	24.6%
치수방재관리	사업예산	1,342	1,059	283	26.7
	예비비등	8,340	6,710	1,630	24.2

5. 검토의견

□ 기금운영 규모 및 내용

- 2004년도 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 총 규모는
수입, 지출 각각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77억6천9백만원 보다
19억1천3백만원이(24.6%) 증액된 96억8천2백만원임.
- 기금운영 예산 수입, 지출 증감 내용은
 - 수입부문에서는
 -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은 2억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천4백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제잉여금은 33.8%증액된 67억1천만으로
전년도이자 및 출연금 등 기금증가에 따른 이월금 증가분이며,
 - 전임금은 1억5천1백만원(5.9%) 증액된 26억8천4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것은 지난해 보통세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임.
 - 지출부문은
 - 사업예산은 지난해 비해 26.7% 증액된 13억4천2백만원으로 이는
재해 사전대비보수·보강사업 및 수해피해응급복구비이며
기금적립금은 24.2%가 증액된 83억4천만원임.

□ 종합의견

- 2004년도 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24.6%가 증액된 96억8천2백만원이며
전체예산의 86.1%인 83억4천만원을 기금적립금으로 편성하였음.
- 재해대책금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예방·재해복구 등 재해대책관리를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 세입예산중 전입금 5.9% 증가는 최근 지역경기 회복에 따른 것으로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책무임을 감안할 때 다행한 것이며
- 재해대책기금은 치수사업특별회계와 잘 조화를 이루어 예산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고, 도출연금은 조례에 근거한 “전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 연구과제로써 재원확충의 필요성과 기금운용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일선기초자치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감대형성과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7.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4년도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가. 건설도시국 : 2004년도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3. 11. 12.

나. 회부일자 : 2003. 11. 12.

다. 상정일자 : 2003. 12. 2.(제183회 도의회 제2차장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3.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 기금명칭 :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
- 설치근거 : 재난관리법 제56조,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 설치목적 :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등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우려시설 응급조치
- 설치년도 : 1998. 12.31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나.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도말 현재액(A)	2004년 운용계획			2004년말 현재액(A+B)	비 고
		수입	지출	증감(B)		
재난관리 기 금	2,542	779	200	579	3,121	

- 재원조성 :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도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 지원기준

- 기금조성액의 50%이하 운용
- 융자조건은 연리 5%,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융자한도액은 1인당(가구당) 2천만원이하

- 지원대상 : 재난위험 시설·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되어 입주민에 대하여 긴급대피 또는 이주명령에 따른 융자

4.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계	3,321	3,321	2,542	2,542	779	30.6%	779	30.6%

나. 수입·지출 예산개요

(1)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 감	비 고
관	항				
합 계		3,321	2,542	779	30.6%
경상적 세외수입	소계	108	125	△17	13.6%
	이 자 수 입	108	125	△17	-
임시적 세외수입	소계	3,213	2,417	796	32.9%
	순세계잉여금	2,542	1,784	758	42.4%
	전입금	671	633	38	6.0%

(2)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 감	비 고
항	세 항				
합	계	3,321	2,542	779	30.6%
치수방재관리	사업예산 예비비등	200 3,121	200 2,342	- 779	- 33.2

5. 검토의견

□ 기금운영 규모 및 내용

- 2004년도 경상북도재난관리 기금운용 총 규모는

수입, 지출 각각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25억4천2백만원 보다 7억7천9백만원이(30,6%) 증액된 33억2천1백만원임.

- 기금운영 예산 증감 내용은

• 수입부문에서는

- 경상적세외 수입은 적립금 이자수입이 1억8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은 42.4%증액된 7억5천8백만은 이월금 기금증가 분이며,
- 전입금은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증가에 따라 도비 출연금이 3천8백만원이 증가된 것임.

• 지출부문은

- 사업예산은 재난위험시설보수·보강에 2억원, 그리고 기금정립금은 33.2%가 증액된 31억2천1백만원임.

□ 종합의견

- 2004년도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30.6%가 증액된 33억2천1백만원이며,
전체예산의 93.9%인 31억2천1백만원을 기금적립금으로 편성하였음.
- 재난관리기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과 긴급구조 등 재난관리를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 재원조성은 조례에 근거하여 전3년간 지방세법에의한 보통세 수입 예산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이 연 5%는 타기금운용이나 시장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3%로 낮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가구당 한도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나 5천만원 범위내로 확대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시군으로 확대하여 재원조성을 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7.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정활동보고서(제183회 정례회)

2004. 1 인쇄 / 2004. 1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